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5 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의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방송 기자 인식 연구

- 관행, 동기, 효과를 중심으로

언론홍보학 전공

이 윤 희

2016

의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방송 기자 인식 연구

- 관행, 동기, 효과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언론홍보학 전공 이 윤희

이윤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조연하

심사위원 차희원

임소혜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목 차

I . 서론	1
A. 문제제기	1
B.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3
II . 문헌 연구	7
A. 취재원 보호에 관한 이론적 배경	7
1. 언론의 자유와 책임	7
2. 취재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8
3.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적 논의	11
B. 익명 취재원 보도의 이론적 배경	17
1. 익명 취재원 보도의 개념과 특징	17
2. 익명 취재원 보도에 관한 선행 연구	20
C.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 실태	35
1.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 분석 방법	35
2.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 분석 결과	36
III . 연구 방법	44
A. 조사대상자 표집	44
B. 조사 실시 및 분석 방법	46
IV . 연구 결과	47
A. TV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의 관행	47
1. 익명 취재원 표기의 유형	47
2. 익명 취재원 편집의 유형	51
B.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의 동기	54
1. 기능적 동기	54
2. 사회적 동기	56
3. 편의적 동기	60

C.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의 효과	66
1. 기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	66
2. 기사의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	69
 V. 결론 및 논의	76
A. 연구 요약 및 논의	76
1. 익명 취재원 보도의 관행에 관한 논의	77
2. 익명 취재원 보도의 동기에 관한 논의	79
3. 익명 취재원 보도의 효과에 관한 논의	80
B. 연구의 의의 및 한계	85
 참고문헌	86
Abstract	91

표 목 차

<표 1> TV 보도 프로그램 이용 점유율	4
<표 2> 투명성에 따른 익명 취재원 분류	10
<표 3> 공정성의 요소	25
<표 4> 심층 인터뷰 대상자	45

그 림 목 차

<그림 1> 취재원 인용 비율	36
<그림 2> 익명 취재원의 유형	39
<그림 3> 익명 취재원 편집의 유형	51
<그림 4> 익명 취재원 보도의 효과	67

논문 개요

“대통령의 한 측근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 언론에서 이런 표현이 단 하루라도 등장하지 않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 ‘측근’, ‘관계자’, ‘전문가’ 등과 같은 단어야말로 신문과 방송을 막론하고 언론에서 가장 즐겨 쓰는 용어가 됐다. 바로 익명의 취재원들이다. 익명 보도는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첫째,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고급 정보를 근거로 나온 보도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기사 내용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시킨다. 둘째, 이런 고급 정보를 흘려준 정보원을 언론이 적극 보호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해당 언론사가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 윤리를 투철히 준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렇게 ‘측근’, ‘관계자’, ‘전문가’ 등의 입을 빌려 기사에 표현된 내용들이 알고 보면 익명에 숨은 허위 정보이거나 혹은 익명을 내세워 기자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으로 밝혀지는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해당 보도는 언론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저버린 최악의 보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 방송 기자들이 인용하는 익명 취재원에 주목했다. 신문이 아닌 방송 뉴스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신문에 비해 방송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TV 속 익명 취재원은 신문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보다 그 발언이 갖는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석과 평가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취재원의 유형과 직업별 분석, 취재원 인용에 대한 한미(韓美)간 비교 연구 등이 주로 이뤄져 왔을 뿐 ‘익명’의 취재원에 대한 별도의 연구 사례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신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TV뉴스의 익명 취재원 인용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 도출한 연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방송 기자들이 익명 취재원을 보도하는 관행은 어떠한가?’ 둘째,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방송 기자들의 동기는 무엇인가?’ 셋째, ‘익명 취재원 보도의 효과에 대한 방송 기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방송 기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방송, 즉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 소속 기자 15명을 대상으로 익명 보도의 사용 관행과 사용 동기,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인식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익명 취재원을 보도하는 방식을 표기와 편집의 단계로 각각 나눠 살펴본 결과, 기자와 취재원들간 사전 합의된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관계자’ 와 같은 다양한 표기 방식은 기자의 임의적 선택이 아닌 취재원 발표 내용과 형식, 취재원 직급에 따라 기자와 취재원들끼리 미리 정해 둔 양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행을 유지함으로써 기자들은 취재원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안정적으로 입수하게 되고 취재원은 실명 공개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은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익명 취재원 보도에 있어서 신문과 방송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익명 취재원이 지면이 아닌 TV 화면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방송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나 촬영한 화면을 영상으로 편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익명 취재원은 모자이크나 음성변조와 같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게 된다. 이 경우 보도 내용의 민감성 혹은 취재원 신분이 사적이냐 공적이냐에 따라 취재원의 노출 정도, 즉 익명성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자들은 권위 있는 취재원(authoritative source)을 선호한다는 싸르(Sahr, 1993)의 지적처럼 취재원이 고위 공직자일수록, 또한 취재 내용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취재원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익명성을 강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정 과정은 1차적으로 기자와 취재원간의 합의, 2차적으로 데스크의 검수 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취재원들의 요구 사항이 적극 반영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최종 단계에서 데스크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익명 취재원 사용 동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정보 확보를 위한 기능적 동기, 둘째는 취재원 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동기, 셋째는 취재 및 보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편의적 동기다. 다시 말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정보 확보라는 실리와 취재원 보호라는 명분 외에도 취재 및 보도상의 편의를 위한 목적에서도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익적 목적과 취재원 보호에 한 해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익명 취재원이 기자의 편의나 의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로 취재 윤리적 관점에서 면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세 번 째 연구문제인 익명 보도가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부정적 견해가 혼재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서는 취재원을 익명으로 인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사 신뢰도가 낮아진다고 보는 견해와 함께 익명 취재원을 통해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보다 높아

진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었다. 반면 기자의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기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는 취재원의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뷰 내용의 왜곡된 편집 등 일부 부적절한 사례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익명 취재원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취재원에 접근하는 기자의 의식과 양심에 따른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익명 보도의 문제점을 단순히 취재원 사용 빈도나 유형과 같은 객관적 요인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하는 관행과 접근 동기, 그것이 기사에 미치는 효과와 같은 주관적 요인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취재원의 선택과 활용에 기자의 가치 판단이 적극적으로 개입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판단이 기자의 오판, 나아가 수용자의 오판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익명 보도와 관련해 명확한 취재 및 보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신문과 방송사 모두 익명 보도와 관련한 윤리 강령 및 보도 준칙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대부분 강제성 없는 선언적, 형식적 규범에 그치다 보니 실제 취재와 보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기자들 상당수가 익명 취재원 보도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국내 언론의 현실상 익명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익명 취재원 보도에 내재된 위험적 요인에 대해 언론인들 스스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다 실천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국내 방송사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일보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 . 서론

A. 문제제기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뉴스 속에서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정치인, 기업인, 법조인부터 정부 부처 공무원, 경찰, 교수 등 직종과 직위도 다양하다. 기자에게 각종 정보와 기사거리를 제보하는 이들을 가리켜 취재원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취재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며 그들의 해설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한다. 다시 말해 취재원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곧 뉴스가 되고 그들의 생각과 관점은 여론 형성과도 직결된다. 취재원의 중요성은 다수의 언론학자들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슈츠슨(Schudson, 1978)은 “뉴스 생산 과정은 취재원에서 시작하며 취재원은 저널리즘의 초고”라고 말했고, 갠즈(Gans, 1979)는 뉴스를 “취재원으로부터 독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라고 정의함으로써 뉴스의 출발점이 취재원임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논설위원을 지낸 시걸(Sigal, 1973)은 “뉴스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며 취재원의 존재 의미를 역설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뉴스가 세계를 만나는 창(窓)이라면 취재원은 창틀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장을 누비는 일선 기자들에게 취재원은 더욱 실질적 가치를 지닌다. 기자가 어떤 취재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특종과 낙종이 갈리고, 뉴스의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취재원은 기사의 존재 기반이자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취재원의 이름과 소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취재원은 해당 기사가 허구나 추측이 아닌 검증 가능한 사실(fact)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며, 따라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기사는 사실 관계 확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기사의 신뢰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박성희, 2004; 박재영, 2006; 이재경·김진미, 2000; Itule & Anderson, 2003; Kovach & Rosenstiel, 2001).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면 ‘고위 관계자’, ‘핵심 당직자’, ‘소식통’과 같은 익명의 취재원들일 것이다. 기사 내용이 민감하고 중대한 내용일수록 취재원들이 자신을 감추려는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자신의 발언이 미칠 파장과 그에 따라 자신에게 되돌아 올

불이익, 즉 부메랑 효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익명 보도는 취재원들의 이같은 불안 심리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기자들의 원활한 취재 활동을 돋기 위해 사용된다. 취재원의 신상과 소속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익명 보도를 통해 취재원들은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기자들은 취재원에게 접근하거나 취재원으로부터 은밀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한결 용이하다(Williams, 1978). 문제는 익명 보도가 갖는 불확실성에 있다. 기사의 출처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익명의 취재원을 앞세운 각종 미확인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특히 신문과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종편), 온라인 매체까지 가세해 언론사간 속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¹⁾ 당시 일부 언론들이 교육부 관계자, 해경 관계자 등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앞다퉈 1보를 내보내려다 ‘학생 전원 구조’라는 대형 오보를 낸 것이 대표적 사례로, ‘기자’에 ‘쓰레기’를 더한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이 됐다. 오보라는 최악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최근 우리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익명의 관계자’들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소모적인 논쟁이 자주 반복되는 것도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익명 보도에 내재된 위험성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감안할 때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할지 여부는 기자 개인은 물론 언론사 차원에서도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국내 언론사들의 경우 이같은 판단의 기준이 될 취재 준칙이나 윤리 강령이 미비한데다 대부분 선언적, 형식적 규범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매체간의 과도한 속보 경쟁 등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취재 환경 속에서 익명 취재원은 기자들이 편의에 따라 인용하는 손쉬운 보도 수단으로 변질됐고 익명 보도의 남발은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로 지목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취재원 익명 보도와 관련한 기자들의 관행과 인식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1) 2014년 4월16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으로 당시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했다.

B.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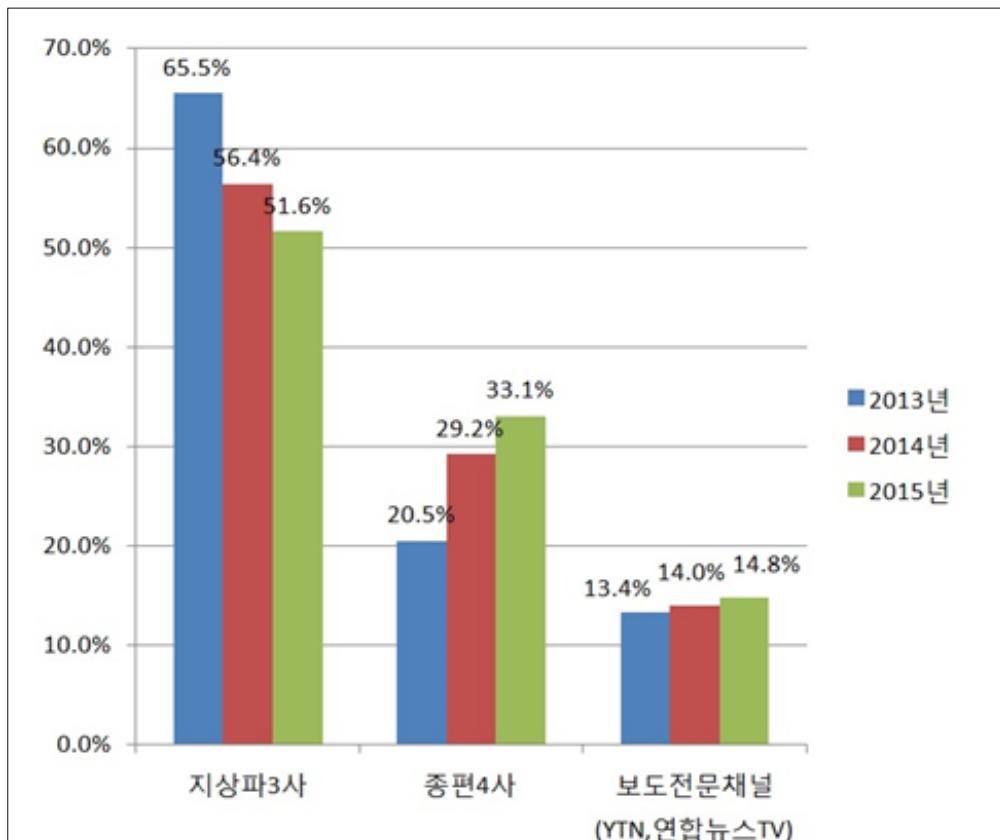
익명 취재원 보도를 둘러싼 논의는 국내 학계에서 꾸준히 이뤄져 왔다(김연미, 1997; 김영욱, 2006; 남재일, 2006; 박재영·이완수, 2007; 이동근, 2001; 이재경·김진미, 2000; 장호순·오수정, 2001; 홍연희, 2015; 홍용락, 1986)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신문 기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을 뿐 방송 뉴스에 관해서는 학문적 논의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단계다. 그러나 신문에 비해 방송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TV 뉴스의 취재원 활용에 관한 연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설문 조사 결과 지난해 뉴스 시사정보를 얻기 위해 의존한 매체를 묻는 질문에 신문이라고 답한 비율은 10.1%에 그친 반면 방송이라고 답한 비율은 54.2%로 나타났다.²⁾ 특히 주목할 점은 2011년 12월 종편³⁾ 출범을 계기로 국내 TV 뉴스 시장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TV 조선과 채널 A, JTBC, MBN 등 종편 4개가 일제히 개국하면서⁴⁾ 기존의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와 케이블 보도 채널(YTN, MBN)들이 누려온 독과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TV뉴스가 사실상 무한 경쟁 체제에 접어들었다(백선기, 최경진, 윤호진, 2011). 출범 초기 부정적 전망과 달리 종편 4사의 방송뉴스 이용 점유율은 2012년 9.2%에서 2013년 20.5%, 2014년 29.2%, 2015년 33.1%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1>

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2015)

3) 종편'이란 '종합편성채널'을 줄여 부르는 말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을 통하여 뉴스, 드라마, 교양, 오락, 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방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2011년 12월 중앙일보의 JTBC, 조선일보의 TV조선, 동아일보의 채널A, 매일경제신문의 MBN이 동시 개국했다.

4) 방송 뉴스 이용점유율 = 1년 평균 시청률 × 편성 시간 × 방영횟수

<표1> TV 보도 프로그램 이용 점유율



이처럼 방송의 파급력에 더해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한 매체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TV 뉴스에 인용되는 익명의 취재원의 발언은 예기치 못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취재원 익명 보도의 관행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방송 기자의 관점에서 점검해 보는 작업은 시의적절한 논제일 뿐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방송은 전파의 희소성과 영향력 등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하는 매체로 인식되고 공익적 의무 또한 더 엄격하게 부여되기 때문이다(배진아,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하는 방송 기자들의 관행과 동기를 밝혀내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기자들 인식을 확인하는데 있다. 기자들과의 1 대1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송 뉴스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어떤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지, 기자들이 익명 취재원을 인용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취재원 익명 보도의 효과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을 현장 경험에 바

탕한 실제 사례와 증언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일찍이 익명 취재원의 위험성을 체득한 미국에서는 각 대학마다 이 분야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언론사들도 자체 준칙을 제정해 실행해 오고 있다(박재영, 이완수, 2007).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도 익명 취재원 보도와 관련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기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언적 규범에 그칠 뿐, 실제 보도 현장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는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 특히 방송은 신문과 달리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 등 다양한 영상 기술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화면 조작 혹은 취재원 인격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하지만 취재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지식을 체계적인 교육 과정 없이 도제식으로 대물림 받는 한국 언론의 현실에서 이같은 익명 보도의 위험성은 기자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출입처 관행과 맞물려 취재원의 익명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익명 보도와 관련한 방송사 윤리 강령의 실효성 강화 등 실무적 차원의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익명 보도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취재와 보도에 보다 집중된 역량을 발휘하게 한다면 궁극적으로 기사의 질적 향상과 언론에 대한 신뢰도 제고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설정했다. 요약하자면 익명 취재원 보도의 실태와 동기, 효과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익명 취재원 보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언론계 관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TV 뉴스의 특성상 방송 기자들은 기사 작성과 영상 편집이라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최종 보도물을 생성해 낸다. 연구문제1은 이들 각각의 단계에서 익명 취재원을 보도하는 표기와 편집상의 관행이 존재하는지, 그러한 관행은 어떤 형태로 고정화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가 의존해 온 기사 내용 분석만으로는 연구문제 1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제 취재와 제작 경험에 바탕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연구문제 1. 방송 기자들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관행은 어떠한가?

- 1-1. 익명 취재원 표기의 유형은 어떠한가?
- 1-2. 익명 취재원 편집의 유형은 어떠한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기자들이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하게 된 동기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기자들이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할지 여부는 대부분 취재의 초기 단계, 즉 취재원과의 첫 만남 혹은 그 이전 단계인 취재원 섭외 과정에서 결정된다. 연구 문제 2는 기자들이 실명을 포기하고 익명을 택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연구문제 2. 방송 기자들이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한 동기는 무엇인가?

마지막 연구 주제는 익명 취재원 보도가 미치는 효과를 기자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본다. 익명 취재원 보도가 기사의 공정성 혹은 신뢰성을 저해하는 측면은 없는지, 때론 기사의 사실 관계를 왜곡할 우려가 없는지 등 익명 보도에 따른 결과적 측면을 기자들의 인식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문제 3. 방송 기자들은 익명 보도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II. 문헌 연구

문헌 연구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익명 취재원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취재원의 정의와 분류, 각각의 특성에 대한 기존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취재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 익명 보도의 근본 취지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취재원 보호와 관련한 국내외 법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짚어보고,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주제와 유형별로 분류해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기존 연구가 신문 위주로 진행되어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6개월간 TV뉴스에 등장한 익명 취재원의 사용 빈도와 유형에 관한 연구자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먼저 취재원 보호에 우선하는 개념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이러한 개념과 본 연구주제와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A. 취재원 보호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명시해 언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생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도형 등으로 불특정다수인(不特定多數人)에게 발표하는 자유를 말하며, 그것은 인간과의 자유로운 접촉을 전제로 한다(이종률, 2005). 기자들의 언론 활동은 보도라는 결과물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언론 자유의 핵심은 보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장철준, 2005). 기자가 뉴스 보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뉴스가 될 만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자유, 즉 취재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취재원과의 만남에서부터 정보 입수, 사실 확인 등 일련의 취재 과정에서 자유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보도의 자유는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 활동, 각각의 단계에서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언론의 자유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외부의 감시나 제약을 받지 않는 정보의 수집과 유통을 통해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은 상당하다. 문제는 과도한 정보의 노출과 매스미디어 기능 확대, 매체간 속보 경쟁의 격화

등으로 인해 기자들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가 취재 대상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이수형, 2007). 여기에는 타 법익과의 충돌, 즉 국가 기밀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충돌 등이 포함된다. 특히, 비리나 고발성 뉴스의 경우 보도를 통해 취재원의 신상이 노출됐을 경우 신체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손해, 사회적 지위 상실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적 자유론자들의 주된 논거이자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유책주의의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언론의 책임은 취재원에 대한 보호로 구체화된다. 취재원이 언론에 제공한 정보로 인해 신분상 또는 신체상으로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즉 언론의 취재원 보호는 언론인의 윤리적 사명이기도 하다(팽원순, 1989). 이는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취재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위해를 막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로 귀결된다. 어떤 제도와 방식을 통해 취재원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책임이라 함은 법과 제도를 통한 취재원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취재원 보호법을 둘러싼 제반 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적 차원의 책임은 기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보도 방식에 따라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취재원의 신상을 비공개 처리하는 익명을 활용한 보도다.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사실상 전무한 우리나라에서는 익명을 활용한 보도가 취재원 비nik권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 취재원 보호법을 둘러싼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기에 앞서 취재원의 개념과 분류 양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담긴 함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취재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취재원의 개념

취재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작품이나 기사 재료의 출처(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신문이나 잡지에 실을 기사의 자료를 얻을 만한 곳이나 사람(연세한국어사전)’으로 명시되어 있다. 취재원을 영어로 풀어 쓰면 news source, 뉴스의 근본적 출처로 해석된다. 즉 취재원은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 그리고 이들에게서 나온 모든 자료와 기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송효빈(1993)은 “일선 취재 기자가 뉴스거리를 수집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과 물건을 통틀어 일컫는 명칭”이

라고 했고, 김연미(1997)는 인물과 자료 구분 없이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기사의 실질적인 정보 근원지”라고 정의했다. 즉, 취재원은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정보를 얻는 모든 통로를 말한다. (김지영, 2008; 송문석, 2009; 이재경, 2005; 한국언론재단, 2001; Rich, 2003). 취재원의 개념을 사람과 자료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이냐를 놓고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엇갈리기도 한다. 이재경(2005)은 문건이나 녹취록, 영상물 등이 취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에서 사람이 주요 취재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갠즈(Gans, 1979)도 취재원을 “신문이나 방송에 등장한 사람, 기사에서 인용된 사람, 배경 정보나 기사를 제보한 사람 등 언론인이 목격했거나 인터뷰한 인물”이라고 취재원의(人的) 속성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슈메이커와 리스(Shoemaker & Reese, 1996)는 “연설, 인터뷰, 보고서 혹은 정부 청문회든 어떤 것과 상관없이 1차 자료의 외부적 공급”이라고 정의해 기사의 주된 출처를 사람이 아닌 자료로 판단했다.

한국의 기자들은 기사의 80%를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에 의존한다는 조사 결과로 미뤄 취재원을 인물과 자료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우리 언론 현실에 보다 적합하다(박용규, 1996). 특히 컴퓨터와 모바일 기술 발달로 기자들이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취재 경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SNS 등 모바일 공간을 떠도는 문서나 사진, 개인 혹은 단체간 대화 내용들이 기자의 취재 활동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실제 기사화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언론사마다 사내 디지털 대응팀을 가동해 온라인상의 정보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려는 추세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직·간접적 제보가 대형 특종으로 이어진 경험적 사례에 근거한다. 즉, 전통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던 대면(對面) 접촉이 점차 온라인 혹은 모바일상의 비대면 접촉으로 옮겨감에 따라 취재원의 개념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취재원이라 함은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얻는 모든 통로, 즉 기관이나 개인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상의 모든 유·무형의 자료와 기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취재원의 분류

앞서 언급했듯이 취재원은 기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에 따라 인물취재원(human sources)과 자료 취재원(physical source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취재원 분류 방식으로 꼽힌다(Mencher, 1991). 인물 취재원은 사건의 목격자나 제보자, 기자가 직접 인터뷰한 사람이다. Rich(2003)는 인물 취재원이 기사에 ‘즉

시성(extemporaneity)’과 ‘흥미성(interest)’을 더해서 사건이나 사실을 보다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장호순, 오수정(2001)은 인물 취재원을 보다 세분화해 개인 취재원과 단체 취재원으로 분류한다. 단체 취재원이란 정부나 정당, 기관을 마치 개인과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청와대의 OO가 …라고 말했다”와 같이 개인의 소속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청와대가 …라고 말했다”라는 식으로 조직이나 단체를 인격화해 취재원으로 내세운 기사들이 자주 발견된다는 것이다. 인물 취재원과 자료 취재원처럼 형식에 따른 분류 외에도 시걸(Sigel, 1973)은 취재 경로가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이냐에 따라 관례적 경로(routine channel)와 비공식 경로(informal channel)로 구분하기도 했다. 보도 자료나 기자회견, 재판, 청문회와 같이 정부의 공식적 절차에 따라 정보가 도달된다면 관례적 경로로 분류하고 흔히 백 그라운드 브리핑(background briefing)이라고 부르는 정부 관계자의 배경 설명과 취재원의 제보, 집회나 시위와 같은 비정부적 절차, 타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비공식 경로로 분류했다. 이 같은 분류 기준을 적용해 한국 기자들의 취재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공식 발표나 배경 설명, 기자 회견과 같은 관례적 경로를 통해 공공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87.2%로 가장 많았다(유재천, 이민웅, 1994).

취재원을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은 투명성이다. 기사에 등장한 취재원이라도 자신의 신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재 기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를 부분적 혹은 완전히 감추는 경우도 존재한다. 보통 전자를 실명 취재원, 후자를 익명 취재원으로 지칭한다. 익명취재원(anonymous source)이란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기사화할 때 이름과 소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인용한 취재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Riffe, 1980). 미국 언론에서는 익명 취재원(anonymous source)을 무기명 취재원(unnamed source), 가려진 취재원(veiled source), 정체 불명 취재원(unidentified source) 등으로 표현한다(홍연희, 2015). 이건호, 정완규(2008)는 한국과 미국 신문 1면에 나타난 취재원 연구에서 익명 취재원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표2> 투명성에 따른 익명 취재원 분류

분류 명칭	표기 방식	예시
단순 익명	소속 · 성명 미표기	회사원 김모 씨 (49)
소속 익명	소속 표기 성명 미표기	환경부 김모 사무관
단체 익명	집단명 표기	청와대 측
다수 익명	불특정 복수 취재원	일부 시민

이처럼 학자들이 연구목적에 따라 취재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인물 취재원과 자료 취재원으로 구분한 Brooks(2002)와 Mencher(1991)의 전통적 분류 방식을 따랐다. 본 논문의 주제가 익명 취재원과 관련한 내용인 만큼 연구 대상은 인물 취재원에 한정되며 이를 실명과 익명으로 구분해 사용하고자 한다. 즉 인물 취재원 가운데 이름은 없고 성(姓)만 언급한 경우, 이름과 성(姓)을 모두 가지고 소속만 노출시킨 경우, 성(姓)과 소속만 밝힌 경우 등 기사 내용상 취재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익명 취재원 개념에 포함시켰다. 단체명이나 불특정 다수 취재원은 특정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익명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아닌 기관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3.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적 논의

1) 국내 사례

취재원들이 외부의 감시나 압력, 위협을 받지 않고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언론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다. 취재원 보호는 개인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취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필수전제 조건이기도 하다(박재필, 2014). 취재원 보호에 적용되는 개념 중 하나가 취재원 ‘비닉권’이다. 취재원 비닉권이란 언론 매체 종사자들이 자신이 수집한 정보의 출처, 즉 정보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나 정보제공자의 이름을 비밀로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증언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계희열, 2007). 기자들이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 역시 정보를 얻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될 취재원 비닉권에서 비롯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취재원 비닉권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금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4년 12월 세계일보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청와대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박 대통령의 전 비서관인 정윤회 씨가 현직 비서관들을 만나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당시 정국을 뒤흔든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의 도화선이 됐다. 보도가 나간 직후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8명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기자

는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취재원 보호의 원칙을 깨지 않겠다. 취재원을 밝히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한겨레와의 인터뷰, 2014)며 끝까지 취재원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취재 기자의 통화 내역 조회 등 검찰의 강제 수사 방식으로 결국 취재원의 신상이 공개되기에 이르렀고 해당 취재원은 수사 압박에 대한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취재원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사건 뿐 만이 아니다. 지난 20년간 검찰 등 공안당국이 취재원 공개를 요구하며 언론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사례는 1989년 한겨레, 2003년 SBS, 2007년 동아일보, 2009년 MBC 등 모두 4건이다. 이 가운데 한겨레는 편집국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SBS와 동아일보, MBC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기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처럼 취재원 보호를 둘러싼 공권력과 언론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취재원 비nik권에 대한 언론법제의 부재 탓이기도 하다. 사회·경제적 기득권층이나 정치권력의 비밀주의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언론의 적극적 보도가 더욱 요구되는 시대임에도 우리나라의 언론법제 중 취재원 비nik권에 관하여는 아직 명문 규정이 없고 뚜렷한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이종률, 2005). 1980년 12월 제정된 언론기본법에는 제보자 신원 등에 관한 진술거부권과 압수수색 금지 등이 규정돼 있었지만 언론 검열과 등록 취소 등 독소 조항이 문제가 되면서 1987년 언론기본법은 폐지됐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과 관련한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흡수됐지만 취재원 보호는 현재까지 입법 공백 상태다.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나 내부고발자의 고발 창구가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언론을 통한 공익신고나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법적 보호 장치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던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 기자는 이 증언거부권 대상에서 빠져 있다. 다시 말해 변호사, 의사 등의 경우 민·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뢰인 혹은 환자 보호에 관한 비밀 유지를 보장받고 있지만 기자의 취재원 보호권은 실정법상 인정받지 못한다. 기자 혹은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 민·형사 소송이 제기됐을 때 취재원 보호를 주장할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세계일보의 청와대 문건 보도를 계기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이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다. 미국의 방패법에 뿌리를 둔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3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직업윤리에 반하여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취재원”이라 함은 제2조 제4항의 정의에 따르면 제보자의 개인정보, 언론보도를 위해 작성하였거나 제공받은 자료들 모두, 그리고 언론보도를 위하여 이루어진 통신을 포함한다. 또한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사정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취재원의 신원 공개가 우려될 경우 법원 및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제6조(취재원에 대한 압수수색)는 “언론인·제보자 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목적으로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제7조(취재원 등에 관한 증언 거부)에 따르면 “언론인은 법원 및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법안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취재원 보호를 둘러싼 제반 논의에 상당한 의미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 해외 사례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 판례를 통해 취재원 보호권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명시적인 개별 법률을 통해 이를 보장하기도 한다.

미국은 취재원 비밀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미국에서는 건국 초기인 1896년 메릴랜드 주에서 최초로 ‘방패법(shield law)’이 제정된 이래 1950년대까지 12개의 주가 방패법을 제정하였고, 1960년대에는 3개의 주, 1970년대에는 10개 주가 방패법을 도입하는 등 순차적 입법이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2013년 기준으로 와이오밍 등 일부 주를 제외한 39개의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방패법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Middleton & Lee, 2013). 방패법의 핵심 내용은 증언거부권, 즉 국가 안보나 개인에 대한 신체적 위해, 공익과 상관없는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주에서 방패법 적용 대상이 되는 언론인을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 등의 관계자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20여개 주의 방패법은 노트, 미발

행 사진, 비디오 장면 또는 그 밖의 비기밀성 정보의 공개도 기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사 압수수색 제한과 관련해서는 1980년에 제정된 연방법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이 있다. 이 법안은 언론사의 압수수색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뉴스 미디어의 사무실, 책 저자들의 사무실, 그 외에 공중에게 정보를 전파할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폭넓게 규정돼 있다. 또한 압수수색금지 대상은 공중에게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 혹은 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 법은 연방, 주, 그리고 지역의 수사기관 모두에게 적용되며, 언론사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주 법을 추가적으로 제정한 주들도 프라이버시보호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Middleton & Lee, 2013).

유럽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에 가장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온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의 취재원 보호법은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출판 상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한 것은 1926년 바이마르공화국의 형사소송법 제53조였다. 구체적으로는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 “편집인”의 증언 거부권을 명시했다. 1945년 이후부터는 다른 주들이 증언거부권을 규정한 주 신문법을 잇따라 공포했고 연방차원에서의 효력은 1950년대에 들어서서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 1항에 의하여 발생했다. 이후에 언론인의 증언거부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5호는 1953년에 ‘신문종사자’에 관한 것으로 그 형태를 갖추었고, 1975년 개정으로 ‘언론기관 종사자’에 관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해당 조항의 ‘언론기관 종사자’의 적용범위는 2002년 개정안에서 보다 확대된다(권순민, 2009, 236-239). 독일 증언거부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직업군 보다 언론인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53조 제2항은 의사나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비밀주체가 비밀 엄수 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언론인의 증언거부권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권순민, 2009, 248). 이는 언론인을 배제한 채 의사나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종에 대해서만 증언거부권을 인정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외에도 프랑스는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에서 취재원 보장을 첫 개념화한 이래 2010년 1월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 오스트리아나 스웨덴도 취재원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유럽은 이

같은 법률적 근거와 함께 취재원 보호권을 인정하는 다수의 판례를 발전시켜왔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2010년 9월 유럽 인권법원은 “합당한 설명이나 법원의 승인 없이 언론사에 취재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는 편집자를 체포한 네덜란드 당국의 조치는 언론자유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문제의 사건은 네덜란드 출판그룹 사노마가 발행하는 잡지 '오토위크'(Autoweek)가 참가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한 불법경주대회 취재를 허용 받았으나 경찰은 대회에 참가한 한 차량이 현금지급기 강탈 범죄에 동원됐으며 대회 장면을 담은 CD를 제출하도록 잡지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잡지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당시 사법당국은 편집자를 체포하고 CD가 발견될 때까지 잡지사 사무실 폐쇄와 압수수색을 벌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보다 앞서 1996년 유럽 인권법원은 정보원 공개를 거부한 영국 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영국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취재원 보호 권리의 천명했다. 당시 법원은 기자들이 비밀취재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하고 이 권리의 배제하기 위해 정부는 “공익에 있어 압도적인 요건(an overriding requirement in the public interest)”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즉 첫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둘째, 추구하는 합법적인 목표와의 비례성을 증명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이규호, 2012).

취재원 보호를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의 절대적인 권리가 아 니라 특정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는 조건부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김민정, 2005). 취재원 비nik권이 정착된 미국에서도 프라이버스 보호법을 통해 언론사의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둘째, 자료를 압수하는 것이 상해(injury)나 죽음(death)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셋째, 자료에 담긴 내용이 연방 간첩법 (federal espionage laws)에 규정된 “국가 방어(national defense), 기밀 정보(classified information), 또는 접근이 제한된 데이터(restricted data)”에 관련되는 사항일때, 넷째, 증인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였으나 이를 언론인이 거절한 상태이고, 증인을 소환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수사나 재판의 진행을 지연하여 정의 구현에 방해가 될 때이다(42 U.S.C. § 2000aa, 김민정, 2005, 재인용). 이처럼 취재원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역시 무조건, 무제한적 권리가 아닌 보호되는 정보와 증언의 종류, 증언 거부가 가능한 재판 등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서 취재원 보호가 완전한 권리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다(프랭크 맥컬록, 1988).

3) 취재원 보호법을 둘러싼 찬·반 논의

취재원 보호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를 놓고 학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먼저 취재원 보호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취재원 개인의 헌법적 이익을 그 근거로 든다. 취재원이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법으로 보장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이희훈, 2007). 권력 감시는 자유로운 의견 피력과 함께 취재원 본인의 안위가 보장돼야 가능하다. 언론 보도 이후 자신에게 미칠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해 취재원이 정보의 제공을 꺼리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독일의 Egon von Mauchenheim(1973)은 취재원에 대한 비밀 보장 없이는 정보의 자유가 있을 수 없고 정보의 자유 없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도 있을 수 없으므로 취재원 비nik권은 정보의 자유에 가장 중요한 기초적 요소라고 했다. 특히 취재원 제보에 의존하는 탐사 보도나 현장 고발과 프로그램들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비판과 견제, 감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 대부분의 언론 종사자들은 국가 안위와 국가 비밀 유지 등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중요 법익을 제외하고는 헌법상 보장되는 보도의 자유 역시 취재의 자유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유의선, 2003).

반면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취재원 보호를 빌미로 익명 보도를 낭비할 경우 기자와 취재원들이 정보를 독식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지성우, 2003). 이 경우 수용자들이 느끼는 정보량 격차 혹은 정보 괴리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헌법상 취재원 비nik권을 인정할 경우 정보의 출처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기자들이 자신이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전달하거나 사실을 왜곡 혹은 조작할 위험도 있다. 이같은 문제적 시각은 검찰과 사법부가 대표적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김재협 판사는 자신의 글 <위법적 취재관행과 법적 환경>에서 기자의 신분 사칭이나 도청장치, 몰카 등을 이용한 기망 취재, 인터뷰 조작으로 대표되는 가공 취재, 불법적 문서 절취 등 위법적인 취재 관행을 비판하면서 취재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법적인 취재 방법까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에서 보호하는 법익을 훼손하는 탈법적인 취재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법조계 종사자 다수의 입장은 기자의 취재원 보호와 관련한 취재원 비nik

권이 헌법상 강제되는 보호 법익이 아니고 현행법상으로도 취재원 보호 규정이 없어 현행 법규의 입법 취지와 달리 판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유의선, 2003).

이처럼 취재원 보호법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은 해당 법안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실익이 높다고 볼 것이냐, 위법적 탈법적 취재행위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팽팽히 엇갈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법적 공백 상태가 이어져왔다.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법적, 탈법적 취재 행위는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언론의 사회 감시 및 고발 기능을 감안해 취재원 보호법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기자들의 일탈적 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재원 보호법 도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취재 행위에서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취재원의 제보 내용이 갖는 공익적 기능, 즉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B. 익명 취재원 보도의 이론적 배경

1. 익명 취재원 보도의 개념과 특징

기사의 유형은 크게 취재원 실명 기사, 불명 기사, 익명 기사로 분류할 수 있다 (김지영, 2008). 실명 기사는 취재원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누구나 해당 취재원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기사 유형이다. 반면 취재원 불명 기사는 기사 내용에 아예 취재원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은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식의 피동형 기사체를 쓴다. 익명 기사에는 취재원이 등장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박재영(2002)은 취재원 익명 보도의 기준을 취재원의 성명이 노출됐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원의 성(姓) 또는 성의 초성(初聲)만 표기되거나 가명인 경우는 당연히 익명 보도로 봐야 하며, 성별, 나이, 소속, 직업, 직책의 정보가 일부 혹은 전부 제시되어 있어도 이름이 없으면 이 역시 익명 보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익명 취재원 보도란 다른 사람과의 구별을 가능케 하는 이름의 고유 역할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당사자의 정체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한 기사 유형이라고 개념 지을 수 있다. 취재원 익명

보도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이 실제 뉴스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재원 익명 보도 예시 - 세계일보 2011년 4월 15일>

중국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15일 “다음달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가 1년을 맞아 해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 기업들도 사업 재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일부 기업은 정부 측으로 직간접 경로를 통해 대북 제재 해제 방침을 전해 듣고 ‘사업 재개를 준비하라’는 말까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광물자원 반입 사업을 했던 A기업은 베이징에서 사업 재개를 위해 북측 거래선과 물밑 접촉을 벌써 시작했다…정부는 공이 북한에 넘어간 상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도발방지를 약속한다면 5·24조치 해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비핵화 문제는 별개로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현지시간)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미 협의를 거쳐 북·미 대화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핵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당국자는 현지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남·북, 미·북 대화는 6자회담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대화들을 통해 비핵화의 진전을 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본 기사에는 밑줄로 표기된 총 4명의 익명 취재원이 등장한다. 중국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 대북사업을 하는 A기업,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 정부 고위 당국자다. 일단 기사만 봐서는 취재원의 실체를 알기 힘들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이라고 표현된 익명 취재원은 취재원의 소재지(베이징)와 대략적인 업무 영역(대북 소식통)만 제시됐을 뿐 이름과 소속,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모두 생략했다.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가 곧 해제될 것”며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 내용이 인용됐다. ‘A’라는 영문 이니셜로 표기된 기업은 대북 제재 해제 움직임을 감지한 업체들 분위기를 전달하는 핵심 취재원으로 보이지만 역시 정체가 불분명하다. 외교가 한 인사라고 소개된 취재원의 발언은 바로 앞 문장인 “정부는 공이 북한에 넘어간 상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를 보충하는 것으

로 봐서 정부의 외교부 관리일 가능성은 있지만 전직 외교부 관료인 경우나 정부에 속해있지 않은 외교가의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정부의 외교 정책을 실명으로 언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국내외 파장을 감안해 이같은 익명의 ‘소식통’을 쓰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 내용이 공개됐다.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고위 당국자라면 외교통상부 장차관 혹은 6자 회담 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이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세계일보 이외에도 국민일보, 연합뉴스 등에서도 특파원이 취재한 같은 내용의 기사가 모두 ‘고위당국자’로 공통된 표현을 쓴 것은 취재원의 사전 요청을 특파원들이 수용해 통일된 방식으로 기사화한 결과로 추정된다.

익명 보도가 실명 보도와 구별되는 특징은 첫째, 취재원의 익명성으로 인해 기사의 출처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출처 확인 여부는 기자가 취재원에 관한 정보를 어디까지 노출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성(姓)씨만 공개하는 경우, 성 씨와 소속만 공개하는 경우, 성 씨와 주소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취재원 정보의 노출 정도가 줄어들수록 기사의 출처 확인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취재원 인용에 특정 용어들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관계자, 당국자, 소식통 등 기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지만 앞서 제시한 기사처럼 취재원의 요구와 기자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언론사간 통일된 용어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취재원 실명 보도는 발언 주체의 인지도, 영향력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일 경우가 많지만 익명 보도는 발언 주체보다 전달 내용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즉 취재원이 ‘누구’인지보다 ‘어떤 내용’을 언급했는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교 문제 등 실명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의 보도 혹은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에 익명의 취재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익명 보도의 경우 발언의 책임 소재나 주체가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취재원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상황, 즉 여론 조작이나 역정보 유출, 외교 공작 수단으로 언론의 보도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 또한 출처의 불명확성이 뉴스 가치를 반감시키고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고 볼 수 있다.

2. 익명 취재원 보도에 관한 선행 연구

익명 취재원 보도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익명 취재원 보도의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익명 취재원 빈도와 유형에 주목했다. 다른 하나는 익명 취재원 보도의 장단점에 관한 연구로 익명 취재원이 기사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기자와 수용자 인식을 조사했다.

1) 익명 취재원의 비중과 유형

기사에 등장하는 전체 취재원 가운데 익명취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는 국내외 언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보여 온 주제다. 익명 취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사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언론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특정 기간 내 기사 내용을 분석해 실명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의 인용 횟수를 비교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흥미로운 점은 학자들 연구 대부분에서 실명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의 비중이 7대 3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 취재원이 전체 취재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보면, 익명 취재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컬버턴(Culbertson, 1975)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12개의 신문을 대상으로 익명 취재원 비중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분석 기사 중 3분의 1 가량이 익명 취재원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경·김진미(2000)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1999년 1면 기사 109건을 분석한 결과 실명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이 각각 74%와 26%의 비율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국내 신문 1면 머릿기사를 분석한 박재영(2006)의 연구에서는 전체 취재원의 26%가 익명 취재원으로 나타났고 같은 해 조동시·양승혜(2006)의 10대 일간지 지면 분석에서도 익명 취재원 비중은 24.3%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다만 조동시·양승혜는 기관과 단체 취재원을 제외하면 익명 취재원 비중이 42%까지 증가했다는 추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홍연희(2015)의 연구에서는 조선일보 1면에 등장하는 실명과 익명 취재원의 비율이 정확히 70%, 30%로 분석됐다. 익명 취재원 비중의 증가 추이를 특정 시점이 아닌 통시적으로 추적한 연구로는 1959년(제1공화국)부터 1984년(제5공화국)까지 익명 취재원 인용 비율을 시대별로 구분한 흥용락(1986)의 조사가 대표

적이다. 분석 결과 신문의 익명 취재원 인용 비중이 제2공화국 이후 계속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원인은 제3공화국 이후 언론 활동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 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언론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이뤄지는 시기에는 기자들이 스스로 문제시되는 정보를 아예 포기하거나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기 때문이다(김연미, 1997).

익명 취재원 유형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취재원의 편향성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언론이 의해 설정에 있어서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더 편향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 중 하나가 취재원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뉴스 지면에 취재원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그에 따른 권력이나 영향력이 반영 된다는 의미로(Berkowitz et al., 1996) 취재원을 직업별 혹은 직종별로 분류하는 작업은 언론이 일부 특정 집단의 편향된 목소리가 아닌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학문적 시도다. 이와 관련해 시걸(Sigal, 1973)의 연구는 취재원의 사회적 신분을 분석 유목으로 삼은 시초로 볼 수 있다. 시걸은 1949년부터 1969년까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1면 기사의 취재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취재원 선택이 공직자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두 신문에 등장하는 취재원의 46.5%는 미국 연방 정부의 공직자 혹은 공공기관이었고 외국 공직자가 27.5% 지방정부 공직자가 4.1%를 차지했다. 사실상 80%에 달하는 취재원이 공직자였고 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은 14.4%에 불과했다. 시걸의 분석틀을 이용한 후속 연구는 1980년대를 거쳐 90년대까지 이어진다. 브라운(Brown et al., 1987)의 연구에서는 취재원 가운데 50% 이상이 정부 기관 취재원이었고 특히 이 가운데 70%는 고위급 행정 관료로 나타났다. 헬린(Hallin et al, 1993)은 미국의 7개 신문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관련 기사에 등장한 취재원을 분석한 결과 행정부와 의회 소속 취재원이 국내 취재원의 82.5%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또, 정부 측 취재원은 단순한 인용 횟수 뿐 아니라 기사 편집에 있어서 전면에 등장하는 횟수도 더 많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언론사 기자들이 정부 측 취재원의 발언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독자들의 이목을 끌고 발언의 의미와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편집 의도로 해석된다. 그레이브 등(Maria E. Grabe et al, 1999)은 연구 대상을 TV뉴스로 넓혀 취재원 유형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고급 시사 매거진 프로그램인 <60minutes> 사례 분석을 통해 취재원의 약 40% 이상이 정부 관료와 기업가, 전문가, 학자 등 엘리트 집단에 집중돼 있음을 밝혀냈다. 이상의 선형 연구는 미국 언론의 정부 중심 취재 경향과 함께 취재원 선택에 있어서도 고위

급 관료 등 엘리트 집단에 대한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탐사 보도 기자인 존 필저(John Pilger)는 “관급 취재원 중심의 미국 저널리즘은 체제가 설정한 목표의 옹호자로서 ‘불편부당’ ‘객관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왜곡된 보도를 일삼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⁵⁾

취재원 유형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4대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장호순(2001)의 연구에서 인물 취재원의 58%가 공직자로 나타났다. 이원락(2004)은 노태우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대통령 임기별로 취재원 분포를 살펴본 결과 모두 4,844건의 분석 대상 기사 가운데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 국가 기관이 취재원인 경우는 모두 3,876건으로 7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 기사의 98%가 공직자 혹은 공무원을 취재원으로 선택해 한국 언론의 관급 기사 의존도가 1970,80년대 미국 언론 못지않게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동시·양승혜(2006)는 연구 대상을 익명 취재원으로 좁힌 게 특징이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직업별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공직자(공무원)가 전체 익명 취재원의 3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기업인, 일반 개인, 시민단체 등 순이었다. 이 연구의 분석틀을 적용해 조선일보 1면 기사의 익명 취재원 유형을 파악한 흥연희(2015) 연구에서도 공직자와 공무원 비중이 48.7%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직자 공무원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익명 취재원 유형이 “~소식통에 따르면”과 같이 소속이나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제시한 ‘기타’ 경우(12%)였다는 점이다. 이는 익명 보도의 증가와 함께 취재원의 익명성이 예전보다 한층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취재원 유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두 나라 모두에서 공직자(공무원) 인용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직자 가운데서도 고위직일수록 취재원으로 더 자주 인용돼 왔다는 사실은 두 나라 언론의 권력지향적 속성을 보여주는 단면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부 기관 중심의 취재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접근성, 정보성, 영향성, 대표성을 들 수 있다(Hackett, 1985; Shoemaker, P. J. & Reese, 1991). 즉, 기자들이 정부 관리와 같은 공적 취재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공식적 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해 인터뷰하기가 쉽다는 점(접근성), 일반 취재원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는 믿음(정보성), 국가에서 정부 조직이 갖는 상징적 위상(대표성)과 공직자의 발

5) 존 필저는 2007년 6월 ‘다음 세대의 자유: 선전, 언론, 검열, 그리고 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정부 중심 언론 행태를 비판했다. 연설 원문은 DemocrcyNow.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이 실제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파장(영향성)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출입처와 대변인제 등 제도적 관점에서 취재원 편중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미국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주요 행정부처가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운영해 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각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한 출입처 제도가 정착돼있다. 출입처 제도는 기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는 안정적 통로로, 정부에는 언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장치로(유재천, 이민웅, 1994)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제도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출입처 기자실에서 이뤄지는 기자와 취재원간의 상호작용을 참여 관찰과 심층 면접 방식으로 분석한 박동숙, 조연하(2001) 등은 취재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민원 혹은 인사 청탁 등 상호간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공생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1973년 도입된 각 부처별 대변인 제도는 정부의 정책 홍보 기능을 한층 강화시킨 계기가 됐다. 각 부처마다 기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언론 대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대변인으로 발탁해 정부의 ‘입’ 역할을 맡기면서 정부 정책이 기사에 반영되는 빈도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 김연미(1997)의 연구 결과 공적 조직을 취재원으로 활용한 기사의 비율은 1950년대에 26.9%였다가 대변인 제도가 도입된 1970년대 들어 41.4%로 급증했다. 특히 베코비츠(Dan Berkowitz, 1987)는 TV 뉴스의 취재원 편중 이유로 화면에 등장해서 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사람, 즉 취재원의 개인적 자질이 한 몫을 한다고 설명했는데 각 부처의 대변인들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관급 기사 중심의 취재 관행에 대해서는 기자와 취재원간의 유착, 기자들간의 담합, 기사에 대한 과도한 자기 검열 등의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지적도 있다(유재천, 이민웅, 1994). 따라서 기자들은 정부 관료나 출입처 의존 성향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심층성 기사의 중요성이 제기된다(김사승, 2007).

2) 익명 취재원 보도의 장단점

뉴욕타임스의 퍼블릭 에디터(public editor)⁶⁾ 호이트(Hoyt, 2008)는 익명취재원 보도를 “언론의 생명이자 맹독”이라고 표현했다. 익명의 취재원은 언론이 사회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언론에 대한 신뢰

6) ‘퍼블릭 에디터’는 일종의 내부 옴부즈맨 제도다. NYT는 전통적으로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나 표절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2003년 전격 도입했다.

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다. 이같은 익명 취재원의 양면성은 미국의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1970년대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인용한 익명의 취재원 ‘딥 스로트(Deep Throat)’는 당시 닉슨 대통령의 불법 도청 사건, 이른바 워터게이트⁷⁾를 세상에 알리며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내부 고발자가 됐다. (당시 익명의 취재원은 30년 뒤인 지난 2005년 마크펠트 전 FBI 부국장으로 밝혀졌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2003년 제이슨 블레어 기자가 익명으로 보도한 이라크 참전 용사 가족들이 모두 허구의 인물로 드러나면서 창사 아래 최대 위기를 맞기도 했다.⁸⁾ 미 언론사들의 굵직한 사건들은 익명 취재원 보도가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익명 취재원 보도의 순기능은 국민 알 권리와 취재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인정된다. 레스턴(Reston, 1980)은 취재원이 익명을 보장받게 되면 보다 자유롭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수용자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량이 늘어나는 장점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정보량의 증대 뿐 아니라 보다 은밀한 내용을 공개할 여지가 커진다는 점에서 취재원의 익명 보도는 정보의 양적 질적 확대를 동시에 유도하는 기재가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수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Blankenberg, 1992). 익명 보도의 순기능은 공적 조직 내 취재원 보호와도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창호(2013)는 공적인 조직은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민감한 정책들이 많은 만큼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이 경우 익명 취재원 보도가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팽원순(1989)은 언론과 취재원간의 비공개 약속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언론의 윤리적 의무이자, 보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익명 보도가 갖는 역기능은 우선, 취재원의 익명성으로 인한 기사 내용의 불투명성, 불확실성, 부정확성에 근거한다.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는 ‘검증(verification)’으로 검증이란 정확하게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확인하는 과정(getting what happened down right)이다(Kovach & Rosenstiel, 2001). 취재원을 인용하는 기사에 대한 검증은 취재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7)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던 1972년 6월 닉슨 측의 비밀공작원들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익명을 사용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는 닉슨 사임의 직접적 발단이 됐다.

8) 2003년 블레어 기자는 이라크 참전 용사 가족 등 허구의 취재원들을 동원해 7개월 동안 39건의 기사 조작과 표절을 일삼다 발각, 해고됐다. 뉴욕타임스는 그해 5월 11일자 1면에 장문의 사건 경위서와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다(홍유진, 2007). 기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은 해당 기사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의 명확성이다. 따라서 기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성, 이에 따른 내용의 불확실성과 부정확성은 익명 보도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수용자들로서는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취재원을 익명으로 쓰면 취재원과의 갈등 소지는 줄어들 수 있지만 독자와의 신뢰 또한 그에 비례해 줄어들 수 있다(이재경, 2013). 뉴욕타임즈의 퍼블릭 에디터였던 다니엘 오크렌트는 자신이 받은 독자의 불평 가운데 보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제1의 적이 익명 취재원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익명 보도의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또 다른 개념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학자와 언론인들마다 그 개념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공정성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진실성, 객관성, 중립성, 불편부당성, 균형성 등의 하위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정성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공정성의 요소

연구자	공정성 구성 요소
웨스트스탈(1989)	진실성, 관련성, 중립성, 균형성
강명구(1989)	사실성, 윤리성, 이데올로기
백선기(1992)	사실성, 균형성
이민웅 이창근 김광수(1993)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독립성
강태영 권영설(2000)	정확성, 균형성, 정보성, 종합성, 다양성, 양시양비론 지향, 불편부당
맥奎일(2005)	사실성, 불편부당성, 당파성, 선전, 주관성
문종대 진현승 안차수(2007)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독립성, 상업성, 윤리성
김연식(2008)	사실의 타당성, 형평성, 취재 과정의 정당성

이처럼 공정성은 이론적으로 여러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지만 정확성과 균형성이 검증과 평가 및 구현의 측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개념이다(박재영, 2005). 박형준(2013)도 공정성 개념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 연구를 통해 ‘정확한 팩트 전달’과 ‘다양한 의견 청취’를 공정성의 핵심 요소로 꼽아 정확성, 균형성을 공정성의 대표

적 속성으로 규정한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했다. 언론계 준칙도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 KBS의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정성의 유관가치로 객관성·사실성·정확성, 다양성, 균형성·중립성 등을 제시했다. 우선 객관성·사실성·정확성에 대해서는 “참 또는 진실과 관련된 가치”로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를 구현하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다양성에 대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견해를 언급할 수 있는 조건에서 공정하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며 “결국 다양성은 공정성의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균형성은 “관련된 당사자의 견해를 당사자의 속성에 비례해서 나누거나 또는 동등하게 나누어 제시하는 것”으로, 중립성은 “두 가지 이상의 관점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도록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성의 하위 개념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정확성과 균형성, 두 가지 개념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정성의 개념을 ‘사실에 근거한 정확성’과 ‘치우치지 않는 균형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정성 개념을 적용하면 익명 보도는 정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을 통해 거짓 혹은 왜곡된 정보를 흘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익명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편집 혹은 해석하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제보자를 만들어 낼 위험이 상존하며 이같은 우려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유력 언론사에서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바 있다.

익명 취재원 보도의 장단점에 대한 기자와 수용자 인식을 조사한 다수의 연구 결과도 있다. 컬버슨(Culbertson, 1980)은 1979년 미국 전역에 있는 209명의 신문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익명취재원의 사용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국 신문편집자의 81%는 익명 취재원을 실명취재원보다 덜 신뢰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밀 누설자를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은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관행이라는 응답도 87%를 차지해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이중적 관점을 드러냈다. 남재일(2006)의 연구에서는 전국 기자 303명 가운데 24.4%가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하면서 자신의 견해가 취재원의 견해인 것처럼 인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실제 취재나 보도 현장에서 익명 취재원의 발언이 왜곡 혹은 조작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익명 취재원에 대한 일반 수용자들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헤일(Hale, 198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미국 대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헤일의 조사에서는 ‘사실 기사’에서 취재원을 감추는 것이 기사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한 학생들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의견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

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는 기사의 신뢰성 혹은 정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자의 주장과 가치관이 반영되는 의견 기사의 경우 취재원 인용시에도 기자의 주관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익명 취재원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예 기사를 싣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손태규, 2004). 전반적으로 기자와 수용자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해서는 기자보다 수용자들의 인식이 더 부정적이고 엄격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업 종사자와 비종사자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취재와 보도 현장에서 익명 취재원의 현실적 필요성을 체감하는 기자들 인식과 일반 대중의 인식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익명 취재원 보도에 관한 언론사 준칙

가. 국내 사례

익명 취재원 보도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익명의 도움 없이는 취재와 보도가 어렵다는 것이 일선 기자들이 처한 딜레마다. 때문에 언론사들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취재원 익명 보도에 관한 윤리 규정 혹은 취재 준칙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신문 편집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신문윤리강령⁹⁾ 실천요강을 통해 취재원 명시와 관련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호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9) 신문윤리강령은 1957년 4월 7일 제정됐고, 1996년 4월 8일 전면개정, 2009년 3월 4일 부분개정 됐다.

- ①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③ (배경설명과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배경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 ④ (취재원과의 비보호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호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⑤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5조 ①항은 기자가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칙적으로 실명 보도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에는 익명 보도를 허용하도록 사실상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공익을 위한 보도, 혹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경우(⑤) 익명을 허용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한 이유를 밝히는 등 익명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름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취재원의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힘으로써 익명성을 최소화 할 것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경우를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지, 취재원의 일반적 지위라 함은 어느 정도의 지위를 의미하는지 등 여러 해석상의 논란과 함께 현장 기자들의 혼선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언론사 가운데는 한겨레 신문이 처음으로 2007년 취재 보도에 관한 자체 윤리 규정을 제정했다. 취재원의 익명 표기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겨레 신문 취재 보도 준칙>

15. (취재원의 실명 표기) 모든 기사에는 취재원의 실명과 신분을 적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조건에 한해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 ① 의견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취재원이 익명을 전제로만 말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입수할 다른 방법이나 경로가 없다고 판단될 때.
- ② 취재원의 실명이 드러나면 각종 위해나 신분상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때. 사실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의견이나 주장, 추측 등을 수집해 보도할 때에는 실명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익명으로 표기된 의견은 독자에게 ‘필자의 주관적 견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남용하지 않는다.
16. (실명표기의 예외) 각종 범죄의 피해자,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만 14살 미만(형사 미성년) 어린이 등을 취재원으로 인용할 때에는 익명으로 한다.
17. (익명 취재원의 표기) 위 제16항을 제외하고, 취재원을 익명으로 적을 때에는 그 이유를 기사에 밝힌다. 취재원 보호라는 기본 틀 안에서, 익명 취재원의 일반적인 지위를 되도록 자세히 적는다.
18. (익명 취재원 보고와 비밀엄수 의무) 기자는 기사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더라도 그 실명과 신원, 익명으로 표기한 이유 등을 담당 편집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담당 편집장 또는 편집국장은 취재원의 신원을 비밀에 부칠 의무를 진다.

한겨레 역시 취재원 표기에 있어 ‘실명 원칙, 익명 예외’라는 신문윤리강령의 기본 방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익명이 허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취재원의 요구가 있고 그 외에 정보를 입수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15조의 ①), 다른 하 나는 취재원 보호가 필요할 경우(15의 ②)에 한해서다. 특히 취재원을 익명으로 적을 때는 그 이유를 기사에 밝혀야 하고 익명 표기 시에도 취재원에 관한 정보와 익명 보도의 사유를 반드시 데스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8). 조선일보도 2000년 개정된 ‘기자 준칙’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할 때는 데스크나 편집 책임자에게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겨레와 공통적으로 기

자들이 데스크와 취재원 정보를 공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선 기자의 보고와 데스크의 지시가 일상화된 언론사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동아일보의 경우는 별도의 준칙이나 강령 없이 기사 작성 스타일북(가이드북)을 통해 취재원의 사생활 보호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 해 익명 표기를 허용한다고 명시해 조건부 실명 보도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방송사들의 취재 준칙도 신문사들이 제시한 실명 보도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나 한층 완화된 표현을 통해 익명 보도의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것이다. KBS와 MBC, SBS의 방송 강령 혹은 윤리 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KBS 방송 강령>

제30항

취재원에게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 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 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먼저 KBS의 경우 취재원에 대한 비밀 보장과 비공개 원칙, 즉 기자의 취재원 보호를 ‘존중’한다는 표현을 통해 강제성이 없음을 우선 전제하고 있다. 특히 비밀 보장을 약속할 때도 ‘절실한 필요’에 의해 ‘경솔하지 않게’ 하라고 명시해 취재원 익명 표기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절실향’과 ‘경솔함’의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 의한 것이어서 해당 조항을 실제 보도 업무에 적용할 때 해석상 논란이 예상되며 기자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MBC 방송제작가이드라인>

가. 취재의 기본 태도와 책임

(1) 취재원에 대한 예의

취재원에 대한 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협박이나 강요, 감정적 질문 등은 배제해야 한다. (중략)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할 경우 취재 제작진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SBS 윤리 강령>

취재활동 실천지침

⑧ 취재원의 신분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사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취재한 내용이 취재대상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1년 7월 개정된 MBC 방송제작가이드는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할 경우 제작진은 ‘예의’ 차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 말 그대로 실명 원칙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SBS는 사측과 노조의 공동합의로 마련한 윤리 강령을 통해 익명 보도의 허용이 가능한 경우를 ‘취재원의 신분적 불이익이 예상될 때’ ‘취재 대상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로 명시해 익명 보도 허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취재원 보호’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취재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혀 내부적으로 즉 기자와 데스크 간에는 취재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나. 미국 사례

최근 미국 콜롬비아 언론대학원이 익명 보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캠퍼스 성폭행 보도, 무엇이 잘못됐나?’라는 제목의 보고서¹⁰⁾로, 문제가 된 기사는 대중문화잡지 롤링스톤이 ‘캠퍼스의 성폭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이었다. 기사에서 버지니아대 여학생 ‘재키’는 2012년 9월 남학생 사교 클럽 파티에 갔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보도 내용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그러나 얼마 후 워싱턴포스트를 필두로 다른 언론들이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롤링스톤은 기사가 게재된 지 약 보름 만에 주요 취재원인 재키 증언에 신뢰성이 부족했다며 오보를 인정하는 내용의 편집자 주를 게시하고 해당 기사를 공식 철회했다. 당시 기사에는 피해자 ‘재키’의 증언만 있었을 뿐, 가해자와 목격자 등 그 외 모든 인물들은 다 익명으로 처리돼 있었다. 해당 기자는 익명으로 인용한 관계자들을 단 한 명도 직접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롤링스톤은 콜롬비아 언론대학원에 객관적이고 정확

10) 참조

<http://www.rollingstone.com/culture/features/a-rape-on-campus-what-went-wrong-20150405>

한 사건 조사를 의뢰한 뒤 관련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롤링스톤의 오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저널리즘의 실패작’이라고 결론짓고 “되도록 익명 보도를 하지 않되, 익명이 불가피하다면 그 빈도를 훨씬 줄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과 대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 후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 확인 과정에서 기자와 편집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쓰는 것에 대해 사실 검증 부서가 철저히 제지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언론계에서는 익명 보도 준칙을 강화하는 등 또다시 자정의 바람이 불고 있다. 롤링스톤 편집장은 익명 취재원 보도에 적용할 보다 명백한 취재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고, 뉴욕타임스는 칼럼¹¹⁾을 통해 “기자들이 보도할 때 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보도를 포기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계 저변에 흐르는 취재원 공개주의는 이같은 여러 불미스런 사건들을 겪으며 그 토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미국 대표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경우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된 제이슨 블레어 기자의 기사 조작 사건 이후 철저한 자정 노력과 함께 익명 취재원 보도와 관련한 윤리 규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뉴욕타임스는 2004년 2월 ‘비밀 취재원(Confidential News Sources)’ 규정, 2005년 5월 ‘독자의 신뢰확보(Preserving Our Readers Trust)’방안, 2006년 6월 발표한 ‘우리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Assuring Our Credibility)’을 통해 취재원 인용과 적시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제시했다(홍연희, 2015). 세 가지 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행 준칙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① 기자는 자기 의견을 기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재원일수록 실명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② 에디터는 실명정보를 얻도록 기자를 더 다그쳐야 한다.
- ③ 익명을 사용하더라도 기자는 익명취재원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바를 그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왜 그런 정보를 제공하려 하는지, 왜 익명으로 게재될 만한자격이 있는지를 기사에 설명한다.

특히 2004년 ‘비밀 취재원’ 규정에서는 인터뷰에서의 익명 인용을 금지하되, 다만 취재원이 법적인 위험이나 생명 혹은 생계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익명 보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도 담당 부장은 취재원의 실명을 알고 있어야 하며, 취재원과의 비공개 약속은 기자 개인 뿐 아니라 회사가 한

11)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안나 노스, 2015년 12월 6일자 칼럼

것으로 간주해서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언론사와의 속보 경쟁에서 불리해지더라도 이같은 인용 준칙은 지켜져야 하며, 지키지 못하면 기사 보류도 감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박재영·이완수, 2007).

뉴욕타임스와 함께 미 언론의 양대 산맥인 워싱턴포스트도 익명 취재원 보도에 관한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앤더슨(Anderson, 1982)은 1981년 워싱턴포스트의 자넷 쿡 사건¹²⁾ 이후 신문 보도에서 익명기사 빈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언론인들의 92%가 익명으로 처리한 기사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고 보고했다. 워싱턴포스트 윤리 규정의 핵심은 이 회사 경영진의 발언이 잘 요약해 보여준다.

“기자들은 가능한 한 취재원과 취재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해서 그 정보가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입수됐는지 독자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독자들은 취재원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 알아야 그 정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도널드 그레이엄(Donald E. Graham)

회장

“불가피하게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경우 취재원의 소속 단체나 소속 부서, 직위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벤자민 브래들리(Benjamin C.Bradlee)

부사장

AP 통신과 LA 타임스는 예외 없는 실명 보도를 지향한다. AP통신은 자사 스타일북을 통해 취재원의 의견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절대로 익명으로 보도하지 않으며 기자가 익명 취재원에게서 정보를 얻어오면 에디터는 기자로 하여금 해당 취재원에게 실명을 재차 요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LA 타임스도 담당 편집자의 사전 허락이 없는 한 ‘가명’의 취재원 사용을 완전히 불허하고 있다(Ethics Guidelines, 2005). 기사의 주된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할 경우 국장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뉴스 가치와 신뢰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2) 워싱턴 포스트의 자넷 쿡이라는 흑인 여기자는 흑인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는 르포기사, ‘지미의 세계’로 풀리쳐 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주인공 지미와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들이 기자가 만들어낸 거짓 인물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른바 자넷 쿡 스캔들은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익명 취재원 보도와 관련한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익명 보도와 관련한 규범적 차원의 노력은 언론사에 앞서 미국 각 대학 저널리즘 스쿨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 주요 대학 저널리즘 스쿨의 교재로 사용되는 *Reporting for the media*에서 저자 Fred Fedler(2005)는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7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 ① 에디터(국내 신문의 부장과 비슷한 직책)나 편집국장의 허가 없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기자는 에디터나 편집국장, 회사 변호사에게 익명 취재원의 신분을 밝혀야 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 ③ 기사에 꼭 필요한 정보인 경우에만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며 그가 권위 있는 정보를 제공할 만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④ 익명 취재원이 뭔가를 과장하거나 특정 대상을 비판할 의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⑤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취재원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 ⑥ 취재원이 왜 실명 공개를 원하지 않았는지 기사에 설명해야 한다.
- ⑦ 취재원이 개인이나 단체를 익명으로 공개하도록 허락해서는 안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미 두 나라 언론사들 모두 취재원 인용과 관련해 ‘실명 원칙, 익명 예외’를 표방한다. 차이점은 ‘예외’의 허용 범위에 있다. 미국 언론사들은 익명 취재원 보도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반면, 우리 언론사 준칙은 익명이 허용되는 예외 조항을 폭넓게 열어두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남재일(2006)은 국내 언론사들의 윤리 강령은 기사 작성 절차와의 연결성이 약해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사의 자체적인 취재 준칙이나 윤리 강령이 기자들의 업무 현장에 적용할 실천적 규범이 아닌 선언적 규범에 그치다 보니 기자들은 조금 더 노력하면 실명 취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편의상 익명 취재원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사 신뢰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언론사들은 취재원 공개 방침을 직업 윤리나 존중의 차원이 아닌 언론인들에게 부여된 도덕적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취재 기자 뿐 아니라 데스크, 즉 공동의 실천 강령으로 제시한 것이다. 즉 익명으로 인용된 취재원의 신상 정보는 기자와 데스크가 서로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익명 취재원을 사용했을 경우엔 그 사유를 독자들에게도 명백히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취재원

이 누구인지 역시 국민들이 마땅히 알 수 있고, 알아야만 하는 당연한 ‘권리’ 이자, 취재기자 뿐 아니라 언론사, 독자들이 함께 지향해 나가야 할 공동의 가치임을 분명히 한 취지로 해석된다.

C.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 실태

1.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 분석 방법

앞서 선행 연구 검토에서 살펴봤듯이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국내에서 TV 뉴스의 취재원에 관한 연구가 일부 있었으나(김은주, 2003; 김정은, 2003) 일반 취재원의 분포와 유형에 관한 연구일 뿐 익명 취재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송 기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라는 본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방송 3사 메인 뉴스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TV 뉴스를 간과한 측면에 대한 보완적 차원인 동시에 본 연구 주제인 방송 기자들의 인식 조사를 위한 예비 조사의 성격을 지닌다. 즉, 내용 분석으로 나타난 방송 뉴스의 익명 보도 실태는 본 조사인 심층 인터뷰 결과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정확한 해석과 함의 도출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분석 대상은 한국의 방송 3사(KBS, MBC, SBS)의 저녁 메인 뉴스로 KBS <뉴스9>와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가 이에 해당한다. 방송사마다 매 시간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뉴스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지만 이들 저녁 시간대 메인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그 날의 핵심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 뉴스의 성격을 지닌데다 다른 뉴스에 비해 제작 과정에서 완성도와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연구가 이뤄진 시점에서 가장 최근 방송분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 8월에서 그해 12월까지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 일주일간을 표집했다. 분석 대상은 주(週)구성표집방법(Constructed Week Sampling)을 통해 확정했다. 매주 다른曜일을 각각 지정해 표본을 얻는 이 방식은 이슈가 순환하는 방송 뉴스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5년 11월 22일은 김영삼 대통령 서거, 2016년 1월 6일은 북한의 수소 폭탄 실험이라는 대형 사건이 발생한 시기로 이 같은 가외 변인이 분석

결과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이 두 기간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표집을 시작한 8월 첫째주 월요일 셋째주 화요일 9월 첫째주 수요일 등 2주 간격으로 각 주의 다른 요일을 지정해 방송 3사 메인 뉴스의 기사들을 추려냈으며 이렇게 모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사 한 꾸러미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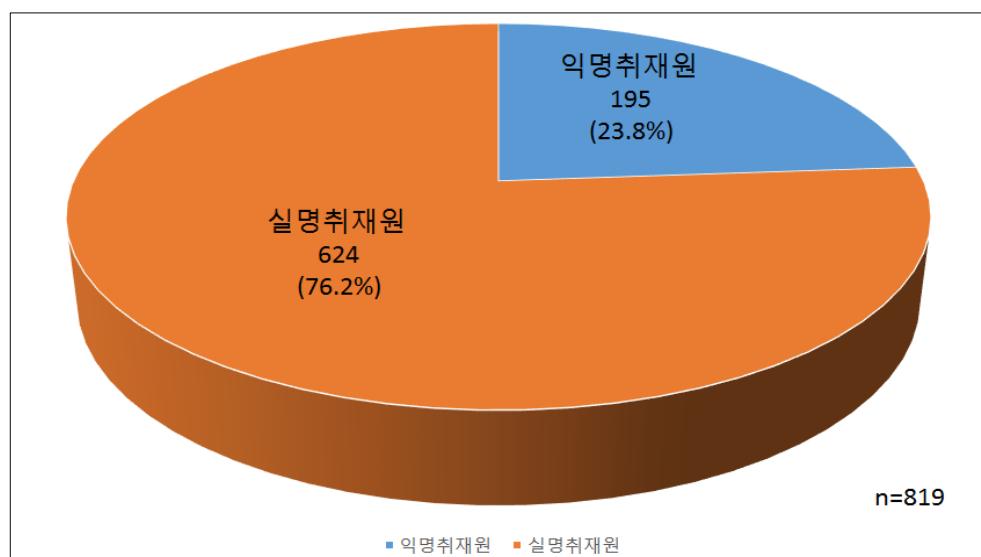
경기 결과를 설명하는 스포츠 기사와 공연 등 단순 안내성 기사, 휴일 스케치성 기사에는 익명 취재원 인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각 기사에는 사람, 외신, 보고서, 보도 자료 등 다양한 취재원이 사용되었는데 자료가 아닌 사람 취재원만을 익명 취재원으로 간주했다. ‘새누리당’, ‘검찰’ 등 단체나 기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있으면 실명 취재원으로, ‘~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 취재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익명 취재원으로 분류했다.

2.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 분석 결과

1)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빈도

전체 분석 대상 기사는 모두 3천889건으로, 총 8백19명의 취재원이 등장했다. 이 가운데 실명으로 등장한 취재원 비율은 76.2%(624명), 익명 취재원은 23.8%(195명)로 나타났다. <그림1>

<그림 1> 취재원 인용 비율



앞서 10대 일간지 지면 분석을 시도한 조동시·양승혜(2006) 연구¹³⁾를 비롯해 신문 기사를 분석한 선행 연구 대부분에서 실명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의 비율이 7 대 3정도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방송 뉴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 신문과 방송 모두 비슷한 수준의 익명 취재원 활용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으로 과거 미디어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디어 선택의 폭이 확대됐지만 공중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의제는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과 방송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양선희, 2008). 이는 신문과 방송 기자들이 같은 출입처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의제를 공유하며 기사를 생산해내는 한국 언론의 구조적 특징 때문으로 보인다. 의제가 동질화된다는 것은 결국 두 매체가 접근하는 취재원도 유사하게 겹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특히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취재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처에서 인터뷰할 대상자를 사전에 미리 조율해 놓기 때문에 신문과 방송에 똑같은 취재원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번 분석 대상 중 2015년 8월 18일 <경복궁 옆 복합문화공간 건립> 기사를 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복궁 옆 대한항공 부지에 한국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KBS MBC SBS가 일제히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방송 3사 리포트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실명 취재원은 모두 세 명으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정책관, 조성배 대한항공 상무이다. 인용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덕/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첨단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전통문화 가치의 재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MBC 뉴스데스크 2015년 8월 18일)

최보근/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정책관

"무대 장치라든가 조명, 음향시설까지 완벽하게 설치해서 K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K팝 공연뿐 아니고 스포츠 대형 이벤트까지 할 수 있는…"(KBS 뉴스 9 2015년 8월 18일)

13) 10대 일간지 지면 분석을 시도한 조동시·양승혜(2006) 연구에서는 실명 취재원 비율이 75.7%, 익명 취재원은 25.3%로 나타났다.

조성배/대한항공 상무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센터 건립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SBS 8뉴스 2015년 8월 18일)

다음날 조간 신문들도 대부분 같은 취재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융합벨트에서 창작된 전통 문화 콘텐츠 등의 시연, 판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2015년 8월 19일 동아일보)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은 “**서울에는 1만 석이 넘는 규모의 음·복합 공연장이 없다. 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할 때마다 무대장치와 조명, 음향시설을 설치했다 다시 철거해야 한다**”며 “**48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조명과 음향시설을 갖춘 1만5000석 규모의 상설 K팝 공연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15년 8월 19일 중앙 일보)

조성배 대한항공 상무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일원으로서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관광과 문화융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2015년 8월 19일)

당시 이 기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정부의 발표 내용 외에도 정부가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선정한 부지가 당초 대한항공이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 온 땅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문화 공간 건립 계획으로 대한항공의 호텔 추진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형 기사와 함께 여기에는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 대한항공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설형 기사도 이어졌다. 눈에 띄는 점은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과 같은 여론에 민감한 내용을 언급할 때는 방송과 신문 모두 ‘대한항공 관계자’ 혹은 ‘대한항공 측’이란 익명 취재원을 인용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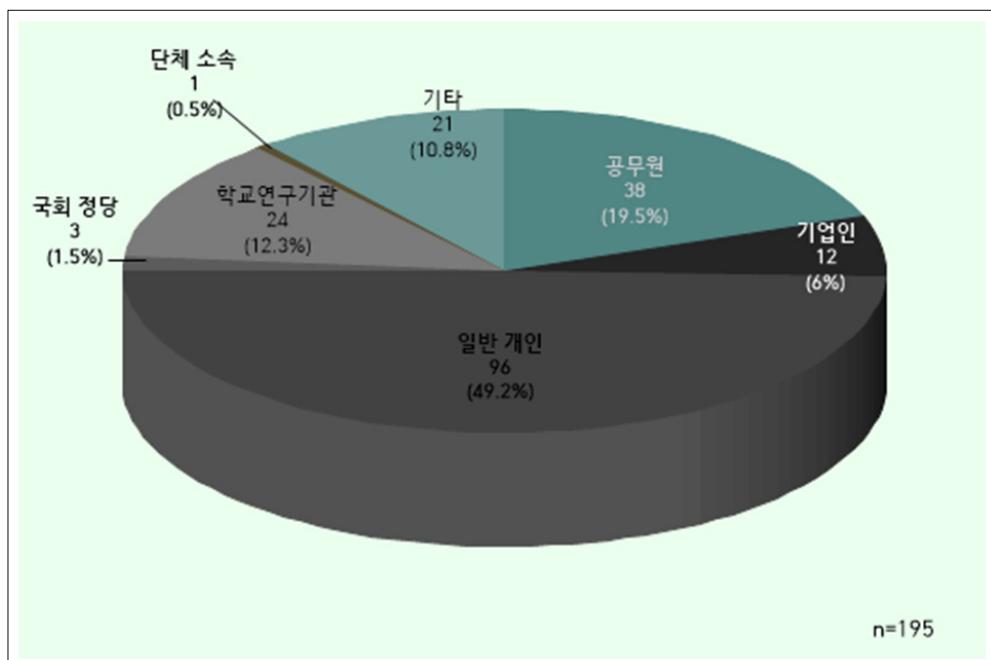
대한항공 측은 복합문화공간은 한국의 전통미를 살리되 첨단기술을 가미해 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략) 대한항공 측은 다만 ‘호텔 포기’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015년 8월 18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당장 호텔 건립은 어렵기 때문에, 부지에 호텔을 제외하고 갤러리와 레스토랑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호텔 건립은 안하겠다.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2015년 8월 19일)

즉, 공식적인 브리핑과 같이 취재원들의 실명이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도 전달하려는 기사 내용의 민감성, 파급력 등에 따라 실명 취재원을 다시 익명으로 바꾼 부분적 익명 보도가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2)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유형

<그림 2> 익명 취재원의 유형



<그림2>는 익명 취재원의 직업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데는 조동시·양승혜(2006)의 익명취재원 직종별 구분을 활용했다. 이는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들을 직종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공무원(공직자), 정치인(정당인), 기업인, 학교·전문가, 단체 소속, 일반 개인, 기타로 분

류하였다. 신문기사에서 ‘한 여당 의원’ ‘교육부 관계자’ ‘검찰 고위 간부’처럼 익명 취재원의 직종이 언급될 경우 이를 각각의 분류 항목 안에 집계하는 방식이다. 시민 단체나 협회, 종교 기관 등은 모두 ‘단체 소속’으로 분류했으며 취재원을 “~소식통에 따르면”과 같이 소속 기관이나 직위를 추측하기 어렵도록 표현한 경우에는 ‘기타’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익명 취재원 가운데 일반 개인이 가장 많았고(96명), 공무원(38명) 학교 및 전문가(24명), 기타(21명) 순이었다.

앞서 조동시·양승혜 연구에서는 익명 취재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직종은 공무원이었고 기업인, 일반 개인, 단체 소속 순이었다. 이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국내 언론의 공적 취재원 편중 경향에도 불구하고 방송 뉴스에서 일반 개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V 뉴스에 실명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두려움, 거부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분석 대상이 된 기사 중에는 민감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익명을 요구한 일반 취재원들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9월 17일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오피스텔 실거래가 오늘부터 공개> 기사에서는 단순한 오피스텔 시세를 전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인터뷰도 다음과 같이 익명 처리했다.

A공인중개사

“월세는 (보증금) 5백만 원에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5백만 원에 36만 원도 있는데 깨끗해요.”

B공인중개사

“(보증금) 3백만 원에 (월세) 40만 원도 있고…”

방송사별로 익명 취재원의 비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 MBC가 26.6%로 가장 높았고 KBS 24.2%, SBS 19%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17일 KBS 뉴스9가 보도한 ‘고속철 해무 실용화 논란’ 리포트에서는 취재원 4명 전원이 익명으로 처리된 사례가 발견됐고,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 2015년 11월 1일 ‘실손 보험의 늪’ 리포트에 등장하는 취재원 7명 가운데 6명이 익명으로 등장하는 등 과도한 익명성을 나타냈다. 두 기사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출처> KBS 뉴스9 2015년 9월 17일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의 시운전 모습입니다.

2013년 3월 처음으로 시속 421km를 돌파했습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시운전은 실제 다 끝났습니다. 성능보완이라든지 연구보완, 추가로 성능개선 및 보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무의 시험운전 평가보고서입니다.

올 6월까지 총 누적 시운전 거리 11만 7천km 가운데 실제 목표였던 시속 400km 이상으로 달린 거리는 2.5%.

대부분의 시운전속도가 현재 운행 중인 KTX 속도 보다 낮은 시속 300km 이하입니다.

<녹취> 코레일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선로로 300km밖에 못 달리는데... 상용화 하기는 어렵죠. 상용 실적이 없으면 수출도 어렵겠죠."

상용화와 수출을 통해 200조 원 이상인 세계 고속철 시장을 노리겠다던 정부는 이제 말을 바꿉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상용화할 수는 없고요. 해무 430은 이제 속도를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파일럿 스타일에 가까운 겁니다."

시운전 할 때 회로 차단기나 제동시스템 등 모두 45차례 고장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철도 관계자(음성변조) : "400km만 넘으면 환호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철도기술의 탄탄한 기반하에서 달성된 건지 일단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게 한 건지 이거는 천지차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시속 600km 급 초고속열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입니다.

<출처> MBC 뉴스데스크 2015년 11월 1일

서울의 한 정형외과.

목과 어깨가 아파서 왔다고 하자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OO병원 의사]

"목이 이렇게 뒤로 돼 있으세요. 거꾸로. 그리고 척추도 약간 틀어져 있고요."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법으로, 이 병원에선 40분 치료에 15만 원. 그런데 실손보험에 있으면 환자부담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OO병원 상담실장]

"실손 보험이 있으시면 본인부담으로는 1만 원, 1만 5천 원만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실비로 해서 환급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도수치료는 의학계에서 치료 효과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등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비용도 병원마다 제각각, 부르는 게 값입니다.

[병원 A]

"1회 비용은 20만 1천 원이에요."

[병원 B]

"9만 원이에요."

[병원 C]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들어가요."

또 다른 병원.

한 번에 15만 원짜리 영양주사를 열 차례 맞으라고 권합니다.

역시 실손보험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OO 병원 상담사]

"기본은 15만 원 정도 하는데 10번으로 하면 100만 원으로 하거든요."

("주사도 되게 비싸네요.")

"그렇게 치료 받으시면 그거는 보험사에서 실손 되는 걸로 알아요."

병원은 돈을 벌고, 환자는 부담없는 의료행위.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으로 처리되는 값비싼 영양주사와 검사, 수술들 중엔 꼭 필요하지 않은 의료가 상당수라고 말합니다.

[정형준 전문의/인도주의실천의사회]

"(불필요한) 비보험 수술 같은 것으로 본인이 혜택을 받으면 받을수록 본인의 보험료도 상승하고 주변에 치료받지 않은 실손 보험 가입자들 보험료가 상승하는 거죠."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과잉진료가 방치되다시피하면서 주요 보험사들의 보험료는 올해만 작년보다 15% 이상 인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던 위험률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해 실손 보험료는 더욱 가파르게 오를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ooo입니다.

특히 KBS와 SBS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인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한 실명으로 인용하는 경향인 반면 MBC의 경우에는 공인이라 할지라도 민감한 내용의 경우에는 익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2015년 8월 3일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탈당 소식을 전하면서 KBS와 SBS의 경우 주변 의원들의 반응을 모두 실명 공개한 반면 MBC는 ‘새누리당 관계자’로 익명 처리했다. 익명 취재원을 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언론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KBS와 MBC의 경우 ‘김모 씨/피해자’ 혹은 ‘김○○/피해자’처럼 성 씨만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SBS의 경우에는 ‘사건 피해자’ 혹은 ‘피해자 남편’과 같이 성과 이름을 모두 명기하지 않은 채 제보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려 한 특징이 발견됐다. 취재원 음성 변조시 KBS는 음성이 변조된 사실을 자막을 통해 명기한 반면 MBC와 SBS는 별도의 표기를 생략했다.

III. 연구 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뉴스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현직 방송 기자들을 대상으로 1:1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같은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가 인터뷰 대상자들로부터 도출한 구체적인 표현 속에서 다시금 그 내용된 의미를 끌어내는 작업으로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특정 현상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 연구방법은 양적인 방법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유용하다(Jensen & Jankowsky, 1991). 또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의견을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영역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Kerlinger, 1973; Lindlof, 1995). 익명 보도와 같이 공정성, 균형성 등 다양한 하위 개념이 존재하는 연구 주제의 경우 객관식 형태의 설문 조사로는 충실향답변을 받기 힘들다. 따라서 연구자와 1대1 심층 면접을 통해 기자들 스스로 익명 보도의 양면성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자신의 경험적 사실에 바탕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 할 수 있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심층인터뷰는 방송 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와 관련된 국내 연구 부족에 따른 자료 수집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국내 방송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 대안을 모색하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A. 조사대상자 표집

연구 문제 및 목적과 부합되는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 의도적 또는 판단적 표집 방법을 사용했다. 의도적 표집(purposive or judgmental sampling) 이란 조사대상자의 특성이나 자질을 근거로 한 비확률적 표집 방법으로 조사대상자의 모집단과 그것의 성분에 관한 연구자의 지식과 연구 목적의 특성을 토대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Barbbie, 1983; Burgess, 1984; Wimmer & Dominick, 1994, 조연하, 2005, 106쪽에서 재인용). 인터뷰 대상자들은 <표4>와 같다.

<표4> 심층 인터뷰 대상자

대상자	매체유형	부서	경력	성별	나이
기자 1	지상파 방송사	사회부	12년	남	39
기자 2	지상파 방송사	경제부	7년	여	37
기자 3	지상파 방송사	정치부	17년	남	46
기자 4	지상파 방송사	과학부	6년	남	35
기자 5	지상파 방송사	보도제작부	10년	여	38
기자 6	지상파 방송사	북한부	15년	여	39
기자 7	지상파 방송사	사회부	4년	남	30
기자 8	지상파 방송사	경제부	16년	여	40
기자 9	지상파 방송사	전국부	11년	남	41
기자 10	지상파 방송사	정치부	4년	여	29
기자 11	케이블 방송사	경제부	16년	남	45
기자 12	케이블 방송사	사회부	10년	남	40
기자 13	케이블 방송사	정치부	3년	남	31
기자 14	케이블 방송사	사회부	11년	여	35
기자 15	케이블 방송사	정치부	8년	남	39

<표5>에서 제시했듯이 인터뷰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채널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유나 운영 재원에 따른 방송사 성격이 익명 취재원 보호의 범위와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섞어 KBS와 MBC, SBS 기자들을 인터뷰했다. 지상파 뿐 아니라 케이블 방송사 기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최근 종편 뉴스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V조선과 채널A, JTBC, MBN 등 4개 종편 소속 기자들도 인터뷰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종편 매체들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해 이들 매체보다 이념적 색채가 적은 보도전문채널 YTN을 선택해 해당 기자를 인터뷰했다. 총 15명을 전후로 같은 의견이 반복되는 현상이 생기고 더 이상 유의미한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응답자 수가 15명이 되는 시점에서 조사를 종료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언론사 입사 경력 3년 이상 된 기자들로 한정했다. 수습 기간을 포함해 적어도 3년 정도의 취재 경력이 있어야 취재원과의 관계도 자신의 시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적 사례를 토대로 유의미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솔직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터뷰 대상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으며 기자 개인이 특정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속 방송사도 지상파와 케이블 두 가지로만 분류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로 선정한 것은 취재 내용과 출입처 특성상 익명의 취재원 인용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부서라는 점 때문이다. KBS 미디어 인사이트(2014년 11월 23일 방송분)가 3일간 6개 일간지 기사 1065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익명 취재원 443명 가운데 청와대와 정치권 관계자, 검찰, 경찰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가 36%(136명)로 가장 많았고, 기업 등 업계 관계자가 23%(104명)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홍연희(2015)의 연구에서도 익명 취재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주제는 정치 기사와 사회 기사로 분석된 바 있다. 이들 조사 결과는 신문 기사만을 분석해 도출한 것으로 본 연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살펴봤듯이 신문과 방송 기자들의 의제 설정과 취재원 선택이 상당 부분 동질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번 인터뷰 대상자 표집의 기준으로 활용했다.

B. 조사 실시 및 분석 방법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기준 연구와 사례 분석, 사전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구조화된 질문 양식을 작성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 내용은 실제 몸담은 출입처에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관행과 동기, 익명 취재원 보도에 따른 효과 등 연구 문제와 직접 관련된 구체적 사항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실제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질문 순서를 바꾸거나 특정 유목 대상자의 관심이나 전문적 경험을 포착해서 추가 질문으로 발전시키는 진행 방식을 사용했다. 인터뷰는 2015년 10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터뷰 대상자가 근무하는 방송사에서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별 인터뷰 시간은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 반까지 소요됐다. 추가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참여자에 대한 e-mail 인터뷰를 병행했다. 모든 인터뷰는 분석을 위해 당사자들의 승인 하에 녹취했다. 현재 익명 보도에 관한 기자의 경험적 사례와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제 심층 인터뷰에서도 응답자가 처한 당시 상황의 배경적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으며 언론사별 특수한 상황을 토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IV. 연구 결과

A.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의 관행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

1. 익명 취재원 표기의 유형

앞서 문헌 검토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관급 기사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즉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의 상당수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라는 점이다. 기자들이 공적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할 때는 이름 대신 ‘관계자’ ‘당국자’ ‘소식통’과 같은 포괄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한다. 기자마다, 언론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익명 취재원은 보도된 사안과 업무적 연관성이 있으면 ‘관계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책임질 위치에 있으면 ‘당국자’, 보도된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책임성은 없지만 그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 혹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소식통’으로 표현돼 왔다. 그러나 익명의 특성상 해당 취재원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과 책임성, 정보성을 갖고 있는지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기자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 익명 취재원을 기사에서 표기하는 방식에는 취재원과 기자들이 사전 약속한 표기 관행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출입했던 외교통상부에서는 기사 한 줄이 자칫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브리핑에 나서는 실국장들이 굉장히 몸을 사리죠.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할 경우 통상 정해진 표기 방식이 있는데 백 브리핑 때는 ‘정부 관계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표기 안 한 채 정부 쪽 관련자임만 밝히는 것이고요. 보통 차관급 이상은 고위 관계자, 실·국장급이면 ‘당국자’, 그 이하는 그냥 ‘관계자’입니다. 딥백 브리핑일 경우엔 ‘관계자’도 쓰지 않아요. 따옴표 없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로 기사화합니다.” (기자3)

기자 3의 인터뷰에 따르면 발표자의 직급에 따라 익명 표기 방식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정부 브리핑은 기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크게 네 가지로 세분화된다. 대변인 혹은 실국장 실명으로 발표하는 공식 브리핑(Officail Briefing), 배경 설명을 위해 ‘익명의 정부 관계자’로 인용되는 백 브리핑(Background Briefing), 보다 자세한 배경 설명을 위해 익명으로도 인용하지 않는 딥백 브리핑(Deep Background

Briefing), 비보도를 전제로 한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다. 여기서 익명으로 보도되는 경우는 백 브리핑과 딥백 브리핑으로 브리핑의 성격과 발표자 직급에 따라 고위 관계자, 당국자, 관계자로 세분화되며 이는 기자단과 출입처 사이에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암묵적 합의에 따른 것임을 다음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끼리는 일종의 무언의 약속 같은 게 있어요.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니까 통상 ‘고위 관계자’로 지칭하고. 대변인과 비서관은 1급이니 ‘핵심 관계자’, 그 밑에 행정관들은 민정라인 관계자, 정무라인 관계자 등으로 대략적인 업무 영역만 표기하는 정도고요. 청와대를 출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종의 관행이라고 봐야겠죠” (기자9)

이처럼 취재원의 표기 방식은 발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익명과 실명이 구분되고, 여기서 익명 취재원의 경우 표기 방식이 취재원 직급에 따라 또다시 세분화됨을 확인했다. 취재원의 직급은 그 사람의 조직내 위상을 나타냄과 동시에 직무상 발언 권한과 범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익명 취재원 보도 관행은 민감한 수사 상황을 다루는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검찰 브리핑은 민감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검찰측 취재원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대부분 ‘관계자’로 나가는데 통상 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이상이면 ‘고위 관계자’, 평검사의 경우에는 ‘검찰 관계자’ 정도로 표기하고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같이 기관명을 쓰면 발언자가 쉽게 노출될 경우에는 ‘재경지검 관계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기자12)

위에서 살펴 본 세 명의 인터뷰 대상자는 각각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법조 출입기자들이다. 이들 세 조직은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곳으로 그만큼 정보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철저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 교섭 상대인 상대국이 있고 국익을 전제로 외국과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특정 사안에 대해 비보도를 전제로 사전에 설명하거나 백·딥백 브리핑 등 심층배경 설명을 통해 교섭의 속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그동안 하나의 관례로 자리잡아 왔다. 따라서 취재원은 통상적으로 익명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터뷰 내용에서 나타났듯이 장·차관급인 경우 ‘고위 관계자’, 실·국장급은 ‘핵심 관계자’ 혹은 ‘당국자’,

그 이하는 특정 수식어 없이 ‘관계자’로 표기하는 관행을 따르고 있다. 직급이 낮더라도 해당 사안과 업무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관계자’로 인용된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커 취재원 노출시 위험과 혼란이 뒤따른다고 판단할 경우 취재원의 익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정말 민감한 사안일 때는 ‘사정 당국 관계자’로 뭉뚱그리기도 하고. 여기엔 국정원, 검찰, 경찰, 청와대 민정라인, 국회 법사위원과 정보위원 등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기자10)

“중요한 정보여서 (취재원이) ‘정부 관계자’로 쓰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엔 보통 ‘소식통’으로 쓰는데 사실 타사 기사를 봐도 정확한 소스를 알 수가 없어요. 정부 관계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간혹 국정원 등에서 확인해주면서 자기들이 드러날까봐 ‘~소식통’ 발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기자2)

앞서 제시한 인터뷰 내용처럼 똑같은 익명 보도라 하더라도 ‘소식통’, ‘사정 당국’과 같이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한 용어들이 사용되면 기사의 출처는 막연한 추정조차 어려워진다. 이렇게 익명성을 강화하는 경우는 기자 개인의 자체적 판단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자 2의 인터뷰에서 보듯 취재원들의 요구나 압력에 따른 경우가 많다. 취재원들의 요구가 없다면 기자가 자신의 기사 출처의 불명확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익명 보도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취재원들은 정보를 제공 혹은 확인해 주는 대가로 익명을 요구하고, 기자들은 정보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뉴스에서 익명 취재원을 드러내는 방식은 기자와 취재원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취재원의 지위와 영향력, 발언 내용의 경증에 따라 출입처별 관행을 따르고 있다. 또 기자와 취재원간 익명 표기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취재원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되는 경향을 확인했다. 그러나 취재원들의 요구가 수용돼 기사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표기 방식은 데스크의 검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는 점에서 데스크의 판단과 결정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교육부 기사도 익명 취재원이 자주 등장하는 기사 중 하나예요. 그런데 교육부 ‘관계자’, 또는 ‘교육부 무슨 무슨 과, 무슨 무슨 과장은’이라고 쓸 바에야 차라리 ‘교

'육부'라고 쓰라는 데스크도 있어요. 어차피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성 있는 기관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논리로." (기자10)

즉, 데스크 겸수 과정에서는 취재원의 인지도나 소속 기관의 대표성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자와 취재원간 사전 합의된 익명 표기 방식이 데스크에 의해서 거부됐을 경우 기자와 데스크간의 마찰 혹은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출입시 당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닥터 헬기'가 유명무실하다는 보도를 기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 공무원 인터뷰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아직 결재가 나지 않은 사안이고 장관 보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명 인터뷰를 거부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신경전을 벌인 끝에 해당 공무원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지만 당시 데스크가 "공무원한테 익명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 리포트 질이 확 떨어진다..공무원이 공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는데 보호할 이유가 없다"며 실명 개재를 할 것을 요구해서 마찰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14)

특히 취재 기자와 데스크의 이견 노출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언론사내 수직적 위계질서와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로 인해 데스크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취재원을 익명으로 할지 실명으로 할지를 놓고 기자와 데스크가 언쟁을 벌이는 경우는 하다해요. 때로는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벌어지지만 여전히 1, 2진으로 얹혀있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상 결국은 데스크 의지대로 가는 경우가 많죠. 어차피 최종 책임은 데스크가 지는 것이니까요." (기자7)

결과적으로 익명 취재원을 표기하는 방식이 결정되기까지는 취재 기자와 취재원의 긴밀한 상호 작용과 데스크의 판단 등 여러 가지 주관적 요소들이 개입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언론사 조직 문화의 특성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 익명 취재원 편집의 유형

방송 기자가 신문 기자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뉴스를 문자가 아닌 영상(음성 포함)으로 전달한다는 점이다. 취재원을 뉴스에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뷰 대상자를 ENG 카메라로 촬영해 편집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은 기사 작성 못지 않게 방송 보도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취재원들의 얼굴과 음성이 화면에 어떻게 노출되느냐는 취재원 보호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방송 뉴스의 편집 과정은 고도의 판단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방송에서 익명 취재원의 편집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자이크, 음성 변조는 취재 대상의 초상권·음성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당사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기술적 도구의 의미를 지닌다. 실명 취재원의 경우 전신이 노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익명 취재원의 경우 얼굴과 신체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음성을 변조시키는 방식으로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은 본인이 화면에 등장 하느냐 등장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림3>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림3> 익명 취재원 편집의 유형



먼저 취재원 등장형의 경우 취재원의 외형적 특징을 일부 제시하되 모자이크 처리 방식으로 누군지는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편집 방식이다. 기자가 취재원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증명해줌으로써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취재원 은닉형의 경우 화면에 취재원의 외형을 일체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이다. 보통 취재원이 자신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터뷰를 거절할 때 기자가 취재원을 안심시키는 방식 중 하나로 활용된다. 이 경우 취재원의 얼굴이나 신체 대신 기사 내용과 관련한 화면이 대신 편집돼 방송된다. 기자가 취재원을 직접 만났는지 여부가 화면상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점에서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민감한 사안을 보도해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기자 판단 혹은 취재원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 육성은 변조 처리되거나 그대로 방송되기도 한다.

이처럼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할 때 영상 편집에 활용되는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를 어느 정도 수위로 조절하느냐에 따라 취재원의 익명성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위 네 가지 사례 가운데에서는 신체 전부를 가리고 음성도 변조시킨 마지막 사례가 익명성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익명 취재원의 노출 정도는 제보 내용의 중요성, 민감성 등을 고려해 1차적으로 취재기자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대체적으로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편집 방식도 한층 엄격해짐을 알 수 있다.

“취재원의 발언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를 세계 해요. 모자이크에도 강도가 있거든요. 취재원의 제보 내용이 그저 그렇다 싶으면 모자이크도 하는 등 마는 등 하지만 이거 진짜 얘기되네? 파급력이 있겠다 싶으면 거의 실체를 구분 못할 만큼 모자이크를 세계 넣어요. 취재원이 얼굴만 가려도 된다 하더라도 취재기자가 이 정도로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음성까지 변조시켜 내보내기도 하고요. 변조만으로도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목소리 성별을 바꾸기도 해요.” (기자11)

이처럼 방송 뉴스의 경우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하는 단계에서 차등적 유형이 발생한다. 위에서 제시한 기자 11의 경우 취재원의 제보 내용이 갖는 파급력에 따라 익명성에 차등을 둔다고 밝혔지만 취재원 신분의 공적 여부, 즉 공직자 신분이냐

일반 개인 신분이냐와 같은 직업적 성격도 영상 편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취재원 중 공직자들은 가급적 모자이크도 세게 하고 음성도 변조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일반인들의 경우엔 그런 긴장감이 좀 덜한 게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공직자들의 경우 해당 보도로 인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죠. 공무원 조직이 워낙 폐쇄적이어서 내부 고발자로 지목되면 베틀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도 공무원들 인터뷰를 편집할 때는 다리 아래 신발도 보이지 않게끔 전신을 다 가리고 음성도 변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자7)

“공무원들과 기자들은 같이 간다고 공동운명체라고 하잖아요. 과장 시절에 만난 취재원이 국장 차관 장관되고 기자는 차장 부장 국장되고 어차피 계속 같이 같은 사람들이라 공무원들 인터뷰 실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게 사실이에요. 그냥 일반 개인 취재원은 언제 또 다시 만날지 모를 사람들이란 생각에서 공무원 인터뷰보다는 신경을 좀 덜 쓰게 되죠 아무래도” (기자8)

취재원의 영상 편집 과정은 기사 작성 과정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게이트키피ング¹⁴⁾을 통해 확정된다. 우선, 취재 기자가 기사를 송고한 뒤 데스크의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영상 편집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편집 완료 후 송출에 앞서 데스크의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장급(부재시 팀장) 데스크들이 완성된 리포트 원본을 최종 검수하는 단계에서 그들의 판단과 의견에 따라 편집된 화면은 일부 혹은 전면 수정 작업에 들어가기도 한다. 취재원들의 인터뷰 길이와 내용, 노출 수위도 이 단계에서 최종 확정된다.

“데스크들 지시로 모자이크를 더 세게 하거나 음성을 변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스크 입장에서는 보도가 잘못 나갔을 경우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게 가길 선호하죠. 저는 굳이 음성변조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데스크가 해야 한다고 우겨서 방송 마감 시간을 몇 분 앞두고 언쟁을 벌인 적도 있어요. 결국 변조를 했지만. 심지어 취재원은 실명으로 나가도 상관없다고 하는데도 데스크가 추후 분쟁 소지를 걱정해 익명 보도를 지시해서 어렵게 섭외한 실명 취재원이 익명 취재원으로 뒤바뀐 적도 있었어요.” (기자13)

14) 뉴스 미디어 조직내에서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결정권자가 뉴스가치에 따라 사건을 취사선택해 기사화하는 과정. 영상 편집 단계에서도 게이트키피ング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익명 취재원의 표기와 편집 관행을 살펴본 결과 취재원이 익명으로 TV 뉴스에 등장하는 과정에는 각 출입처와 방송사내 관행과 함께 기자들의 다양한 판단 기재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사 작성 과정에서 기자와 취재원간에 사전 합의된 표기 양식이 존재한다면 영상 제작 과정에서는 취재원을 어느 정도로 노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데스크의 개입, 즉 게이트 키핑을 거치면서 당초 실명 취재원이 익명으로 바뀌기도 하고 취재원을 노출시키는 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익명 보도 방식은 시청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취재원과 기자들간에 형성된 관행에만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B. TV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의 동기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

동기(motivation)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심적 기재를 말한다(Katz et al., 1974).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그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과 목표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좌우된다(권대훈, 2009). 기자들이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동기가 유발된다.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익명 보도의 동기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즉 정보 확보의 기능적 동기, 취재원 보호 및 관계 유지의 사회적 동기, 업무 효율 차원의 편의적 동기, 취재원의 익명성을 활용한 의도적 동기다.

1. 기능적 동기 - 취재 정보 확보

기자에게 취재력이란 곧 정보력을 의미한다. 경쟁 언론사보다 얼마나 더 빨리, 더 깊이 있는 정보를 확보하느냐는 기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자가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하는 첫 번째 동기는 이러한 업무 성취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자 15명 가운데 상당수는 경쟁사보다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동기에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해서 보도가 나가면 파장이 있겠다 싶을 때 취재원은 익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보도 이후 자신에게 돌아올 신분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된 상태라 이 경우 취재원을 실명으로 인터뷰할 때와 익명으로 인터뷰할 때는 그야말로 천지차이에요. 해당 사안의 깊숙한 내막과 뒷 이야기까지 소위 ‘얘기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선 취재원을 익명으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취재원을 안심시키기 위해 먼저 익명을 제안한 적도 있어요. 정보의 깊이와 양을 생각하면 실명 보다 익명 보도로 얻는 실익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기자1)

“출입처 중 기자들간의 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 중 하나가 검찰이에요. 상명하복식으로 조직 내 위계질서가 엄격한데다 특유의 엘리트 의식 때문에 차장 검사의 공식 브리핑 외에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집단이죠. 하지만 진짜 고급 정보는 공식 브리핑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에게 개별적으로 확보한 정보에서 특종이 나오는거죠. 이 경우엔 거의 100% 익명 보도입니다. ‘검찰 관계자’발로 나가는 기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익명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 씩 캐내는 거죠”(기자2)

기자 2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보 확보, 즉 기능적 동기에서 취재원에게 접근하는 경우 취재원과의 개인적 친분이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적 친분이란 학연과 혈연, 지연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 부처의 출입 기자 명단에 이름과 별도로 출신 학교와 출신 지역을 병기하는 것도 기자와 취재원간의 관계에 업무 외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칠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등 방송사간 속보 경쟁이 치열해진 환경도 익명 취재원 인용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11년 4개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으로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 방송에 보도 기능을 가진 5개 채널이 일시에 등장했다. 뉴스 시간대도 기존 지상파 뉴스 메인 시간대인 오후 8시~10시(MBN-8시, 채널A-8시 반, TV조선-9시, JTBC-9시)사이에 집중 편성됐다. 비슷한 시간대에 타사보다 1보를 앞서가기 위한 매체별 속보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기자들의 익명 취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아래에 제시한 기자 6의 인터뷰를 보면 기자들은 타사에 비해 경쟁력 있는 기사, 즉 속보성의 확보가 취재원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사와의 치열한 속보 경쟁이 시작되면 익명 보도의 유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명으로 부실한 정보를 얻느니 익명으로 처리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는게 낫다고 판단하는거죠. 특히 무슨 무슨 케이트, 무슨 무슨 리스트... 이런 대형 스캔들이 터지면 사무실에서 TV 켜기가 겁나요. 각 채널마다 무슨 무슨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팩트를 팡팡 터뜨리는데 그 순간부터 취재원이 실명이냐 익명이냐는 무의미 하죠. 누가 더 취재원으로부터 고급 정보를 얻어내느냐만 남게되는거죠” (기자6)

특히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 상당수가 신문 인터뷰에는 응하면서 방송 인터뷰는 사절하는 취재원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방송 기자들에게는 신문 기자에 비해 취재원들의 노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들이 지난 정보를 공개하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익명이라는 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똑같은 익명의 취재원이라도 신문으로 보도될 때와 방송으로 보도될 때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지 않아요. 방송 뉴스의 모자이크 화면이라든지 CG(컴퓨터그래픽)로 그려지는 인물 실루엣, 인터뷰 자막 처리 등은 신문 기사처럼 활자로만 제시될 때보다 훨씬 강렬한 인상을 남기거든요. 신문에 적시된 익명은 흘러가는 느낌이 강하다면, 짧은 방송 뉴스에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취재원들은 방송 기자 만나는 것을 훨씬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기자10)

위 인터뷰 사례는 방송 기자와 신문기자 사이에 익명 취재원 접근 동기가 다르게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방송 매체가 여론에 미치는 파급력이 신문 매체보다 강력하다는 점은 언론사의 영향력 면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하지만 일선 기자들이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확보를 위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적 동기는 신문 기자보다 방송 기자에게서 더 강하게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2. 사회적 동기 - 취재원 보호 및 관계 유지

기자가 취재원을 익명으로 인용하는 또 다른 동기는 취재원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자와 취재원의 만남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기자라면 대부분

취재원에 대한 꾸준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그들과의 관계 유지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다. 취재원 관리의 핵심은 취재원 보호다.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취재원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인터뷰 결과 취재원과의 관계 유지 동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즉, 취재원의 요청에 의해 익명으로 보도한 경우를 외부적 동기라고 한다면 취재원의 요청 없이 기자의 자체 판단에 따른 익명 보도는 내부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 동기 부여의 요소를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구분했으며, 내적 동기가 더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¹⁵⁾ 실제로 고발성 뉴스와 같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할수록 익명 보도에 대한 기자의 자체 판단, 즉 내부적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사례는 아래와 같다.

“최근 ‘강제로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는 외국 여성들’에 대한 취재를 했는데 이 여성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이 여성을 고용한 업주, 브로커 등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공익을 위해 제보한 여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익명 처리 했습니다. 데스크에서는 취재원의 별다른 요청이 없었으면 실명으로 보도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번 아이템의 경우 취재원의 선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익명으로 내보냈습니다.” (기자5)

“기업체 출입할 때 흥보실 직원이 CEO 관련한 정보를 이야기한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결국 전보 조치까지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죄책감이랄까... 그 이후 일종의 취재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담 기사가 아닌 한 조금이라도 민감한 내용이면 익명을 씁니다. 설령 익명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변조까지 다 합니다. 기자생활 하루 이틀할 것 아니잖아요. 장기적 관점에서 취재원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익명을 써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기자8)

“부정부패 비리 등과 관련한 내부자 제보를 기반으로 취재해 보도할 경우 인사조치 등 취재원이 겪게 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15) Daniel Pink : The Puzzle of Motivation
http://www.ted.com/talks/dan_pink_on_motivation

어떤 기관이나 기업 단체 와 관련한 부정적 사안을 다루면서 해당 기관 등이 입장 표명을 거부할 경우 이 사안에 대해 내용을 알고 있는 내부 인물들의 음성을 녹취 한 뒤 ‘관계자’로 익명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거부한 상황에서 임의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입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해서죠. 출입처를 떠나더라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싶은 취재원이라면 더 그래야 하고요” (기자6)

방송 기자들이 업무상 반복해서 인용하는 취재원의 경우에는 관계 유지의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경제부에서 부동산 취재를 맡고 있는 기자들은 공인 중개사 인터뷰를 반복해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는 지속적으로 원활한 취재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자의 업무적 성과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부에서 부동산 담당을 하면 공인중개사 인터뷰가 리포트에 꼭 들어가. 부동산 시세 언급은 중개업자의 고객인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는 멘트가 실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기자에게 전화해 부동산업소 이름을 따서 묻기도 해요. 중개업자들은 혹시나 장사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 실명이 노출되길 원치 않죠. 제가 경제부에 근무하는 한 부동산 관계자 인터뷰는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업자들을 보도할 때는 실명 익명 고민 않고 익명으로 안전하게 가는거죠”(기자3)

특히 정부 조직과 같이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공직 사회의 경우 취재원들이 낙인 효과¹⁶⁾를 우려해 기자들과의 접촉을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내부의 비리를 제보하거나 외부에 발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조직에 대한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심적 고통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들은 사적 취재원보다 공적 취재원과의 관계 설정 혹은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게 되며 그들로부터 얻는 정보의 대가로 기꺼이 익명의 방패막을 제공하고자 한다. 부쳐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충성된 취재원을 가리키는 은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16)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烙印) 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론.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국세청 같은 경우 세무조사와 같이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곳이라 보이지 않는 취재 경쟁이 치열해요. 무슨 무슨 대기업 세무조사 착수, 아니면 강호동 송혜교 같은 연예인 탈세 건도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으로 인용되곤 했었구요. 이런 익명의 관계자들을 기자들 사이에서는 ‘빨떼’라는 은어로 불려요. 자신의 정체를 외부에 전혀 드러내지 않지만 친한 기자들에게 그야말로 대박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익명이에요. 철저하게 신분을 가려주고 기자들은 최대한 알짜 정보만 빼가는... 이런 관계는 익명이 전제가 될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자8)

취재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익명 보도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한국의 조직 문화 특성과도 무관치 않다. 한국의 조직 문화의 대표적 특성으로 꼽히는 것이 혈연과 지연 등 연줄을 중시하는 가족주의다. 가족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기타 개인적 인간 관계 등 1차 집단 혹은 비공식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공식 집단에 대한 충성심보다 강한 것을 의미한다(정우열, 임재강, 2001). 기자들과 취재원간의 관계에서도 연줄 의식은 강한 결속력과 신뢰감을 유발시키며 이는 출입처를 중심으로 익명 보도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제가 검찰 출입할 당시만 해도 출입기자 등록할 때 출신 학교와 고향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돼 있었어요. 부장 검사 방에 들어가면 테이블 옆에 출입기자들 사진과 함께 나이 학교 출생지가 적힌 큰 종이가 놓여있었거든요. 핵심 취재원과 학연이나 지연으로 얹히게 되면 그만큼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 강해지죠. 아주 사소한 내용이라도 익명으로 보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 혹은 고향 선배인 취재원이 실명 내지 말아달라고 하면 기자들은 자연스럽게 익명으로 보도할 수 밖에 없어요. 인지상정으로...” (기자14)

위에서 살펴본 한국적 조직 문화 특성이 취재원과의 관계 설정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요인이라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의 광범위한 보급은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미래창조과학부 공동 조사 결과¹⁷⁾ 2015년 기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률은 80.9%로 10명 중 8명 이상이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일상적인 사용으로 문제가 된 것이 개인 정보 유출이다. 당사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그

17) 2015 모바일이용실태 조사. 전국 만 12세 이상 59세 이하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2,5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 방식으로 실시.

사람과 연결된 친구의 정보를 추적하면 얼마든지 정보의 유추와 확인이 가능하다. 뉴스에서 취재원들의 이름과 소속 일부만 밝히더라도 SNS 공간으로 옮겨가면 개인정보 추적에 이어 개인 신상 털기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SNS가 처음 등장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까지 목표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SNS를 통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자들에게 취재원 보호라는 동기 부여가 과거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과 SNS가 일상화되면서 취재원 섭외가 더 어려워졌어요. 일단 뉴스에 나가서 화제가 됐다 하면 곧바로 SNS 공간으로 옮겨져 네티즌 수사대다 모바일 수사대다 하는 누리꾼들에게 신상이 털리는 시대가 됐으니까. 취재원들이 단순히 TV 화면 노출만 걱정하는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SNS에서 논란이 될 것까지 생각해서 몸을 더 사리더라고요. SNS에서 신상이 털리는 순간 자신의 프라이버시는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들 인터뷰를 주저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취재원 보호를 위해 기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익명 보도 외엔 없어요” (기자9)

3. 편의적 동기

방송 기자들이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하는데는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여기서 업무상 편의라 함은 취재 이전 단계, 취재 단계, 취재 이후 단계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의미하며, 이같은 목적에서 익명 취재원을 선호하는 현상을 편의적 동기로 명명했다.

1) 보도 이전 단계의 편의성

방송 기자들이 현장 취재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터뷰 섭외다. 신문기자와 달리 방송 기자의 업무에는 취재원이 카메라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문제는 앞서 TV 뉴스의 익명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방송 노출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신문의 지면 분석 연구에서는 익명 취재원 가운데 공직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방송 뉴스 내용 분석에서는 일반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정부 부처의

실국장 등 공직자 인터뷰 섭외는 정해진 공식 루트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일반인 섭외는 전적으로 기자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익명 보도는 이런 상황에서 취재원들의 심리적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효과(Attraction Effect)를 발휘한다.

“방송 기자들끼리 종종 하는 얘기 중에 누가 인터뷰 섭외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고. 인터뷰할 사람 섭외하느라 정작 취재할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전화상으로는 한참 이야기를 잘 하던 취재원도 막상 카메라 들고 찾아간다고 하면 단번에 사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다른 취재원을 찾아 나서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럴 때 기자들이 익명을 제안하죠.” (기자4)

“인터뷰 섭외를 10번 시도했다면 실명으로 섭외에 성공할 확률은 20%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나마 익명으로 시도하면 섭외 확률이 높아지죠. 사안이 좀 민감하다 싶으면 아예 처음부터 실명 인터뷰는 포기하고 익명을 전제로 취재에 들어갈 때도 많아요.” (기자11)

이같은 편의적 동기에는 인터뷰 섭외 시간의 단축 외에 취재를 위한 이동 시간의 단축이라는 또 다른 이점이 작용한다. 인터뷰 섭외가 끝나면 방송 기자는 본격적인 취재 단계에 돌입한다. 영상 촬영이 수반되는 방송 업무의 특성상 취재기자는 촬영 기자와 함께 인터뷰 대상자나 사건 사고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를 영상에 담아야 한다. 신문 방송을 막론하고 기자 직무는 마감 시간에 쓸기는 스트레스를 동반하지만 방송 기자의 경우 촬영에 따른 이동 거리가 많다는 점에서 마감에 임박해 받는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방송 기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최대한 동선을 줄이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같은 목적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사용하게 된다는 다수의 응답이 도출됐다.

“취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 방송 시간이 다가올 때 익명을 조건으로 취재원을 섭외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실명으로 보도하려면 인터뷰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촬영해야 하지만 익명으로 보도하는 취재원은 전화로 인터뷰한 뒤 자막 처리만 해도 되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는거죠. 기자가 자기 편의를 위해 익명과 실명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과중한 취재 업무 때문에 부득이 이럴 경우가 생기게 되는거죠.”(기자2)

즉, 방송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취재원 요구에 의한 타의(他意)적 익명 보도보다는 기자들이 인터뷰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의 자의(自意)적 익명 보도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이같은 편의적 동기로 인한 익명 취재원 사용에는 방송 기자들의 리포트 제작 관행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TV 뉴스는 1980년대 초 이후 나름대로의 고정 양식을 형성해왔다(이재경, 2004). 방송 기사는 앵커멘트와 리포트 본문으로 구성되며 심층 또는 기획 보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포트 표준 길이는 1분 30초 안팎이다. 리포트 본문은 기자 멘트와 인터뷰, 기자 스탠드업¹⁸⁾을 포함하며 보통 하나의 리포트에 인터뷰가 최소 2개 이상 들어가는 것이 방송 기사의 전형이다.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KBS 뉴스9 2015년 4월 2일

<앵커멘트>

어제(1일) 저녁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음악학원에서 불이 나 두 명이 숨지고 일곱 명이 다쳤습니다.

방음 처리된 작은 방이 많은 구조, 방음자재에서 나온 유독가스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 기자입니다.

<리포트>

① 건물 2층 창문 사이로 시꺼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장음> "어머 저기 애들 있는거 아니야?"

불은 19분 만에 꺼졌는데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2명은 출입구에서 가장 먼 방음실에서 뒤늦게 탈출을 시도하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외부 소음과 차단된 방음실에서 음악을 연주하다가 불이 난 상황을 빨리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8) 방송 뉴스에서 기자가 현장을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료 취재가 아닌 현장에서 발로 뛴 기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②<인터뷰> 경찰 관계자 : "(방음실에선) 바깥에서 연기가 들어오지도 않고 소리가 안 들려요. 각자 그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③<기자 스탠드 업>

이 학원에 설치된 가연성 방음재는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고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입구가 좁은 데다 창문도 닫혀있어서 유독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④<인터뷰> 김형주(화재 목격자) : "옆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불도 나지 않고 연기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도 안 보여서 불이 난지 몰랐어요."

⑤불이 난 학원은 규모가 작아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학원 수강생인 16살 문 모군을 상대로 방음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군은 충동 조절장애로 2년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000입니다.

위 사례처럼 국내 방송 뉴스의 대부분이 ①기자 멘트 - ②인터뷰 - ③스탠드 업 - ④인터뷰 - ⑤기자멘트로 마무리되는 정형화된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적 형식을 도제식으로 교육받는 기자들은 인터뷰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비교적 섭외가 수월한 익명의 취재원을 자주 인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보통 메인 뉴스 리포트는 1분20초 길이를 기준으로 인터뷰 최소 2개가 정형화된 포맷이에요. 인터뷰 개수가 여기에 못 미치면 데스크로부터 취재가 부실했다고 질책을 받습니다. 인터뷰 없는 리포트를 내보내면 경위서를 썼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어떻게든 2명 이상의 인터뷰 대상자를 확보하려면 결국 섭외 확률이 높은 익명 취재원을 인용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기자7)

“마땅히 인터뷰 해 줄 취재원이 없으면 해당 기사와 관련성이 극히 떨어지는 사람 까지 동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럴 때는 해당 취재원을 익명으로 그려니까 무슨 무슨 ‘관계자’라고 자막 처리해요. ‘관계자’라는 용어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아주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기자 외에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기자에게는 섭외 고민도 덜고 제작 고민도 덜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되는거죠.” (기자5)

익명의 편의성에 의존한 취재 방식이 고착화될 경우 우리 뉴스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익명 취재원의 남발은 더욱 심화되고 그로 인한 기사의 신뢰도 하락도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방송 뉴스에 대해 “인터뷰 개수는 많은데 정작 기억에 남는 내용은 없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취재 및 보도 관행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2) 보도 이후 단계의 편의성

뉴스가 방송에 보도된 뒤 기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취재원과의 법적 분쟁이다. 실제로 많은 기자들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중 하나로 취재원과의 송사(訟事)에 따른 정신적,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언론보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늘어난 것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다.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면서 언론자유와 인격권간의 충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잣아진 것이다.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판결하면서 상충하는 두 가지 법익, 즉 언론자유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다(장호순, 2003). 언론사·기자들에 대한 소송 제기에는 비단 일반인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정부 관료와 기관도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관, 장관 등 공직자들도 기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¹⁹⁾ 소송 형태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부터 명예훼손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게시금지·기사삭제 청구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제기되고 있다(허윤, 2013).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기자들은 사내 법적 자문을 수시로 받아야 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언론중재위원회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행정적 업무로 취재와 보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기자들은 취재원의 이름과 얼굴을 철저히 가리는 방식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법적 분쟁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19) 지난 2004년 6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은 세월호 보도에 실린 대통령 사진을 문제삼아 서울중앙지법에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회사 선배가 모 대학의 비리를 보도하면서 화면에 대학 이름과 전경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돼 거액의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소송 당사자에게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100% 확실한 게 아니면 무조건 익명으로 가야겠구나... 싶더라고요. 고발성 뉴스에서는 고발 상대를 실명으로 꼭 박아야 힘이 실리는 게 사실이지만 요즘 하도 소송이 많다보니 소위 뒷탈을 없애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익명을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기자11)

기자 11의 경우 본인이 직접 취재원과의 분쟁에 휘말린 것은 아니지만 동료 기자들의 송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익명 보도에 대한 일종의 학습 효과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즉 동료 기자의 송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추후 분쟁에 따른 불편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더 자주 인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도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했을 경우 언론사에 면책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심지어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취재를 했더라도 익명을 보장하고 진실에 근거한 공익적인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부장판사 조해섭)는 인력알선업체 T사가 “일방적 주장에만 기초해 대화내용을 몰래 촬영한 후 방송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 손해를 입었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파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피해 학생과 원고 회사 직원의 대화를 몰래 촬영하는 등 적절치 못한 취재가 있었더라도 모자이크 처리 등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 이상 원고 회사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 경향에도 불구하고 취재원과의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거액의 손해배상 등 금전적 손실에 대한 우려는 권력 감시라는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 이른바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²⁰⁾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직접 소송을 당한 게 아니더라도 동료 기자들의 송사 사례를 지켜만 봐도 덜컥 겁이 나는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적극적으로 비리를 캐내 보도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소송 안 당하고 보도할까 이런 생각에 더 사로잡히고. 상당히 방어적인 자세로 취재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검열도 심해지고.” (기자12)

20) 엄격한 규칙이나 규제, 소송이나 배상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어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자기 검열 효과를 뜻한다.

보도 이후, 즉 미래 시점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제거해 언론의 권력 감시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 편의적 동기는 통시적 경향을 뛴다고도 볼 수 있다.

C. TV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의 효과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

1. 기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

앞서 문헌 연구에서는 취재원 익명 보도는 기사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학계 주장을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심층 인터뷰 결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익명 보도의 효과를 높고 엇갈린 시각이 공존함을 확인했다.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 15명 가운데 8명은 익명 취재원 기사를 오히려 사실 전달에 보다 충실한 기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익명의 취재원을 통해 기사 내용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비록 출처가 불분명하다 해도 이를 상쇄할 긍정적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익명 취재원 보도는 내부자 제보에 따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익명 보도를 통해 특정 조직의 비리 등이 드러날 경우 뉴스에 보다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취재원을 실명으로 인용한 기사는 대부분 힘이 없어요. 말랑말랑한 연성 뉴스들만 있지” (기자2)

“실명 대신 익명을 사용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팩트, 즉 객관적 사실을 더 많이 보도할 수 있는거죠. 예를 들어 실명과 모자이크 없는 그림을 사용하면 해당 취재원에게 예민한 내용을 적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익명과 모자이크를 사용할 경우 보다 디테일한 설명과 상황 제시가 가능하고 이 소스를 바탕으로 주변을 취재하는 등 심층적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자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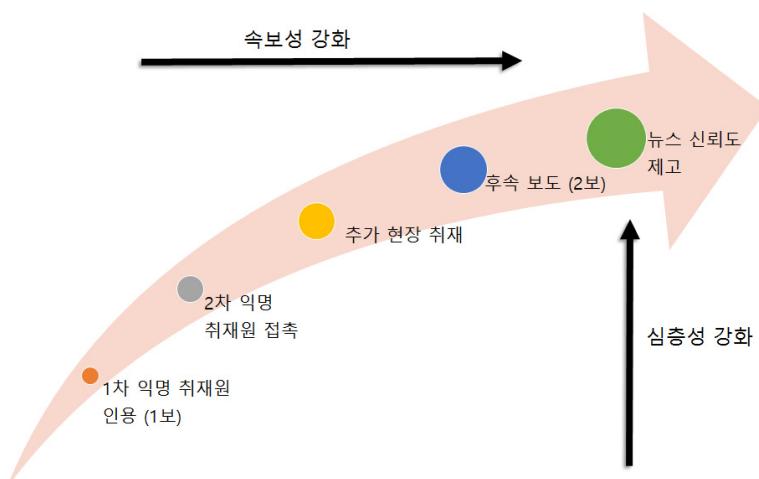
즉, 익명 보도와 실명 보도의 효과를 정보 전달면에서 비교했을 때, 익명 보도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층족 효과가 더 크다는 논리로, 특히 기자 5의 인터뷰 중 “소

스를 바탕으로 주변을 취재하는 등 심층적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익명 취재원을 연결 고리로 한 추가 취재, 심층 취재 강화 등 일종의 나비 효과²¹⁾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익명 취재원 보도가 후속 보도로 이어진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우 농가에서 괴질이 발생해 소들이 죽어나간다는 농민 제보를 받아 단독으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보자는 익명으로 나갔고요. 그런데 다음날 제 리포트를 시청한 어느 분이 먼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자기 농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인도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해 곧바로 현장 취재해서 당일 속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9)

익명 취재원을 인용한 1보가 또 다른 취재원과의 접촉 -> 추가 정보 확보 -> 후속 취재 -> 후속 보도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 이같은 선순환적 흐름은 기사의 내용과 깊이에 심층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수용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1회적, 단편적 보도에 그쳐 온 우리 언론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익명 취재원 보도의 효과



21)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Lorenz, E. N.)가 사용한 용어로,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또한 송종길(2007)은 TV 뉴스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자 집단과 수용자 집단에 대한 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사생활 존중’을 공통적 요소로 꼽았다고 보고했다. 이는 기자와 수용자 모두 취재원의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취재원 보호를 기본 목적으로 삼는 익명 보도는 TV뉴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의 인터뷰가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현재 기자들이 처한 현실에서는 익명 보도만큼 취재원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취재원의 요구에 따라 얼굴 가리고 자막 처리만 하면 그 사람에겐 완벽한 보호막이 생기는 거니까요. 회사 자문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도 취재원 보호는 결국 익명 보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아마 기자들에게 실명 보도만 허용한다면 방송에 나갈 수 있는 뉴스가 지금의 절반 정도로 확 줄어들지 않을까”
(기자10)

반면 인터뷰 대상자 15명 가운데 5명은 익명 보도가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익명 기사가 갖는 출처의 불명확성에 기인한다. 기자들은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의 정체를 취재 기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한 익명 보도의 특성상 기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태생적 한계로 인식한다. 즉, 익명 보도에 따른 신뢰도 하락은 취재원 비공개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특종이라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데스크조차도 이거 진짜냐? 팩트냐?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냐? 꼬치꼬치 묻는데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실명으로 쓰고자 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에서 익명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자11)

“기사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쓰면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아요. 고위 관계자가 대체 누구냐고. (중략) 개중에는 정말 그 사람이 누군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사실 확인하고 쓴 거 맞아?’ 약간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자9)

“저 같은 경우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부도덕한 사생활과 관련해 ○○○내연녀 관련 특종 보도를 한 경험이 있는데 제보자를 밝힐 수 없어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인터넷과 SNS상에서 누군지 밝히라는 등, 소설 쓴 거 아니냐는 등 갖가지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기자2)

이처럼 기사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언론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익명 보다는 실명 보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그러나 동시에, 실명 보도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 규범이 아닌, 지향해야 할 가치 규범이라는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이상(실명)과 현실(익명)의 괴리를 드러냈다. 실제로 인터뷰에 참여한 기자 15명 전원은 익명 취재원을 최소 1회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지 않고 뉴스를 제작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요즘은 미담 기사에도 익명을 쓸 정도니까요. 실명 보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익명 보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기자13)

이는 실명 보도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방송사들의 윤리 강령 혹은 취재 준칙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KBS는 방송 강령, MBC는 가이드라인, SBS는 윤리 강령이라는 자체 규정 하에 실명 보도의 당위성이나 강제성에 대한 언급을 배제한 채 익명 보도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지침만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기자들이 익명과 실명 보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실명 보도에 우선적 가치를 둘 만한 제도적 유인이 없다는 뜻으로 익명 보도의 남발을 막기 위한 언론사 내부 규정의 정비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2. 기사의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

취재원 익명 보도의 효과는 기사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언론 보도에서 공정성이란 개념은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객관성 중립성 등 여러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문종대·윤영태, 2004, p.96). 심지어 언론계 종사자들조차도 공정성의 개념과 평

가 기준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대립해 온 역사적 경험과 보수 대 진보로 나뉘어진 정치적 현실이 더해져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방송 뉴스의 경우 여론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공정성 여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받지만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갖는 모호성 때문에 심의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선행 연구 등을 토대로 공정성과 관련한 대체적으로 공통된 의견을 추린다면 언론이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입장에 치우침이 없이 특정인물이나 사건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논평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 매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기사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균형성을 실현하고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진실을 판단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익명 취재원 보도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취재원에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기사의 공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익명 취재원은 개인 신상과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기자가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자신의 의도대로 편집해 활용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화면과 음성을 자유자재로 삭제, 생성, 변조시킬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인터뷰 분량과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저히 인터뷰 대상자가 섭외되지 않아서 취재원 한 명의 인터뷰 내용을 둘로 쪼개서 각기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한 것처럼 포장한 적이 있습니다. 익명 보도니까 가능한 거죠.”(기자8)

인터뷰 내용 중 ‘각기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한 것처럼 포장했다’는 의미는 취재원 한 명의 발언 내용 중 두 단락을 발췌해 각각 다른 음성으로 변조시키는 방식으로 단수 취재원을 복수의 취재원으로 부풀려 제시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재원A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잘라내 음성 변조한 뒤 또 다른 취재원B가 한 발언처럼 보이게 한 효과로서 이는 TV 뉴스의 기술적 특성에 기인한다. 영상 편집은 오디오 편집과 그림 편집 두 가지로 각각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변조된 육성에 다른 화면을 편집시키면 기자의 의도대로 인터뷰를 분리시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익명

취재원의 인터뷰를 자신의 의도에 맞게 변형시킴으로써 추가 인터뷰 섭외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함과 동시에 최소 2명의 인터뷰를 인용해야 하는 리포트의 형식적 요건도 충족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 두 가지 인터뷰를 보면 기사의 완성도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익명 취재원의 소속을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기자1) 보도 내용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취재원을 익명의 ‘관계자’에 포함시킨 사례(기자15)도 발견됐다.

“법조 출입 시절 모 기업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사실 정보가 나온 곳은 업계 쪽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막은 검찰 관계자로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관계자로 해야 기사 가치가 더 있어보여서. 마음에 많이 걸린 건 사실이지만 익명이니까 저 외에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자1)

“제보 당사자가 전직 수사관이었지만 검찰 관계자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직 수사관도 검찰에 몸담았다는 점에서는 뭐 관계자라고 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현직 수사관도 알기 힘든 수사진행상황을 전직 수사관이 알 턱이 있겠어요? 그 수사관이 대충 건네 듣고 전해 준 얘기도 ‘검찰 관계자’로 표기해 나가면 그 말은 주장이 아닌 사실이 돼버려요. 시청자들은 당연히 현직 검사가 한 얘기로 믿어버릴 테니까요” (기자 14)

“보통 북한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대북소식통’은 전직 통일부 공무원, 북한학과 교수, 대북사업 기업인, 탈북자 등을 다 총칭한다고 보면 돼요.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끈이 있거나 정보가 있는 사람은 다 소식통이 돼버리니까 그 중에는 근거 없는 뜬소문도 많이 유통되는 게 사실이죠” (기자15)

특히 기자15의 경우 ‘○○소식통’과 같이 의미와 범위가 명확치 않은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지는 취재원에게 외형상의 신뢰성을 부여하고자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익명의 취재원은 음성 변조나 모자이크 등 간단한 기술적 처리만으로 보도의 미진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기자들에게는 소구력이 높은 취재원임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위 세 가지 사례(기자 8, 기자 1, 기자 15)에서 봤듯이 익명 취재원을 단순한 업무상 편의의 차원이 아닌 기자의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사의 내용과 형식에 상당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자 8의 경우 사실상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취재원을 만들어냄으로써 한 명의 의견을 복수의 의견처럼 부풀려 전달했고 기자 1, 15의 경우에는 보도된 사안과 업무적 연관성이 없는 사람까지 ‘관계자’로 표기해 방송함으로써 뉴스 내용에 대한 시청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화면상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육성만 나가니까 이런 식의 인터뷰 쪼개기가 가능한 거죠. 육성은 음성 변조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처럼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자 조작 행위나 다름없는 거지만 일단 시간이 임박하면 이런 문제의식조차 사라져요.” (기자5)

기자 5의 사례에서 언급한 인터뷰 쪼개기란 앞서 기자 8의 사례처럼 한 명의 취재원을 둘로 나눠 각기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기자 스스로도 이를 허위, 가상의 취재원을 동원한 일종의 기사 조작 행위로 간주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취재원 A의 발언을 취재원 B의 발언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점에서 사실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취재원 1명의 의견을 복수의 견해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점에서 균형성에도 어긋난다. 이는 기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작 시간에 임박하면 문제의식조차 사라진다’는 대목에서는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있어서 기자들의 윤리적 불감증도 엿볼 수 있다. 기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난 또 다른 익명 보도의 사례로 기자 6의 인터뷰를 제시하고자 한다.

“불법 시위 리포트의 경우에는 취재원을 최대한 숨겨야 기사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에 도움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시위 현장에서 인터뷰한 시위 참가자가 ‘얼굴을 화면에 내도 좋다’고 했지만, 이 경우 불법 시위가 마치 정당한 행위처럼 시청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서 얼굴과 음성 모두 가려서 내보냈습니다. 취재원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로 뉴스에 내보내게 된 거죠” (기자6)

기자6의 사례는 기사의 흐름을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실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해 보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취재원 발언을 내용면에서는 왜곡 없이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시위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려는 기자의 의도가 개입함으로써 실명이 익명으로 뒤바뀌는 형식상의 왜곡이 발생했

음을 알 수 있다. 방송 뉴스에서는 동일한 취재원, 동일한 내용의 인터뷰라도 취재원이 화면상 어떤 영상과 자막을 통해 제시되느냐에 따라 발언 의도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기사는 정확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측면이 높다고 보여진다. 특히 시위나 소송과 같이 찬반(贊反), 즉 갈등 지향적 보도에서는 취재원이 실명으로 등장하느냐 익명으로 등장하느냐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옹호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취재원 인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공정성 시비에는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의 성향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응답도 도출됐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지상파 방송 뉴스와 달리 사유재 성격이 강한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경우 최대 주주가 보수 신문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권력과 보수 정당에 유리한 보도를 한다는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종편마다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크게 확대하면서²²⁾ 기사 내용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이다. 특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익명 취재원을 보도에 인용했을 경우 상대 진영의 문제제기와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 등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한다.

“동일한 기사라도 해당 언론사가 보수나 진보냐에 따라 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매체 자체에 대해 불신하는 '상대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성향이 강한 종편에서 익명의 여당 관계자 말을 인용해 야당을 공격하는 뉴스를 내보냈다고 하면 야당 쪽 진영에서는 당연히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건 분명히 그 매체 기자와 여당 쪽 친분이 바탕이 돼서 쓴 소설이라고.” (기자14)

또 다른 종편 소속 기자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종편 4사 모두 보수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까닭에 진보 진영으로부터의 공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출처가 명확한 실명 보도의 경우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덜한 반면에 출처 확인이 어려운 익명 보도의 경우 신뢰도, 공정성 시비로 이어지면서 소모적 논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2) 방통위에 따르면 종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TV조선 48.2%, 채널A 43.2%, MBN 39.9%, JTBC 14.2% 순이다. 당초 사업 계획(TV조선 24.8%, 채널A 23.6%, MBN 24.3%, JTBC 23.2%)과 비교하면 대부분 높다.

“종편에서 내보내는 익명 보도는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정성 문제로 심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거의 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불신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큰 무리없이 넘어가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갈등을 일으키는 보도일수록 의심의 시선이 커지곤 합니다. 특히 방송은 신문과 달리 당사자를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측은 뭐 하나라도 더 꼬투리를 잡아서 물고 늘어지려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특히 종편의 익명 보도는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편 보도에 대한 마녀 사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자12)

종편의 익명 보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종편 뉴스의 영향력 추이를 감안할 때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를 통해 지적했듯이 종편 4사 모두 시사 보도 중심의 편성 전략을 통해 뉴스 이용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종편 뉴스의 영향력 상승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익명 취재원 보도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키우는 새로운 환경적 요인의 등장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인터뷰에 참여한 기자 15명 가운데 2명은 취재원이 익명이냐, 실명이냐 여부가 기사 신뢰도나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중립적 인식을 나타내기도 했다.

“저는 뉴스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취재원의 '익명' '실명'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익명 보도가 보다 자세하게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추적과 검증, 그리고 상대방의 해명을 듣는 과정이 취재라 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은 이름과 상관이 없이, 사안의 본질에서 차곡차곡 쌓여 발현되는 것 이니까요. 실명이냐 익명이냐는 모든 취재가 끝난 뒤 마지막 '포장' 단계일 뿐이고 객관성이나 공정성 같은 요건은 그 이전, 취재 단계에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4)

“익명을 내세워 허위 조작된 내용을 내보낸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뉴스는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옷을 벗어야 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시대잖아요. 익명을 썼냐 실명을 썼냐 이런 이분법적인잣대로 기사를 판단할 게 아니라 익명 취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자2)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가치 중립적 판단은 그러한 보도가 아무런 영향이나 효과가 없다고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익명 취재원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사에 결정적 흥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즉 익명이냐 실명이냐는 기사 전달을 위한 기술적 장치로 기사 속성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인이 아닌 만큼 익명 보도의 긍정적 활용 가능성에 무게를 둔 시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기본적으로 저널리스트로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왔다면 그 기자가 인용한 취재원이 실명이냐 익명이냐의 문제는 아주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의 질을 평가하는 본질적인잣대가 될 수 없다. 전 그렇게 봐요. 특히 팩트가 명백하고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할 때는 오히려 기사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14)

V. 결론 및 논의

A. 연구 요약 및 논의

현대 사회에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다양해졌다. 신문과 방송, 여기에 최근 가세한 인터넷 매체들은 정보의 양적, 질적인 팽창을 가져왔다. 그러나 매체간 치열한 속보 경쟁과 갈수록 강화되는 비밀주의 속에 출처가 불분명한 익명의 제보자들이 뉴스의 주된 공급원으로서 각 매체의 지면과 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관계자’ ‘당국자’ ‘소식통’ 등 익명으로 처리된 취재원들은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치부를 드러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허위 혹은 날조된 정보, 검증되지 않은 주장 등을 퍼뜨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같은 익명의 취재원들이 갖는 문제점에 주목했으며 그 중에서도 방송 뉴스, 즉 TV 화면 속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에 초점을 맞췄다. 그 이유는 신문에 비해 방송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같은 취재원이라도 TV 화면 속 익명 취재원은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며 그들의 발언이 갖는 파급 효과 역시 해석과 평가를 신문과 달리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익명 취재원에 관한 기존 연구의 역사는 짧은 편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익명 보도의 타당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된 것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취재원의 사용 관행과 유형 및 직업별 분석, 한미(韓美)간 비교 연구 등이 주된 축을 이뤄왔지만 ‘익명 취재원’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매우 드물고 이마저도 대부분 신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TV뉴스의 익명 취재원 인용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즉 TV 뉴스에서 익명 취재원을 표기, 편집하는 방식이 어떤 관행을 따르고 있는지, 기자들이 취재원을 익명으로 인용하는데 어떤 동기가 작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익명 취재원 보도가 갖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익명 보도에 내재된 속성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익명 보도가 언론의 감시 역할을 돋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TV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세 가지 연구 문제가 도출됐다. 연구문제 1은 익명 취재원의 사용 관행이다. 기자들의 업무 상당부분은 출입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출입처에서 발표되는 브리핑과 보도자료는 가장 우선적인 취재 검토

대상이며 출입처내 실무 담당자들은 기자들이 보도에 가장 자주 인용하게 되는 취재원이 된다. 출입처 현장에서 발생하는 익명 취재원의 표기 양식은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떠한지를 취재원과 기자의 실재적 모습에 주목해 연구를 시작했다. 표기 관행과 더불어 이를 취재원을 TV 화면에 등장시키기 위한 편집 관행은 어떠한지도 연구 주제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의 신문 연구와 비교해 TV뉴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실제 제작 현장에서 적용되는 익명 취재원의 편집 방식을 일선 기자들의 현장 중심 인터뷰를 통해 심도있게 분석했다. 연구문제 2는 기자들이 취재원을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인용하게 된 동기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취재원에 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은 신문 기사의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따라서 취재원 활용 동기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 대한 논의는 기존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은 익명 취재원 보도의 효과에 관한 것으로서 취재원의 익명성이 기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TV 뉴스의 익명 보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6개월간 TV 뉴스에 인용된 익명 취재원의 유형과 빈도에 관한 분석을 실시했다. 그동안 진행돼 온 취재원에 관한 연구 중 TV 뉴스에 대한 분석은 2건에 불과하고 익명 취재원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조동시·양승혜(2006)의 10대 일간지 익명 취재원 분석틀을 차용했다. 이어 본격적인 연구 단계에서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보도국 기자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에 관한 분석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익명 취재원을 활용하는 일선 기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KBS, MBC, SBS 등 3대 지상파 방송과 4개 종합편성채널, 1개 보도전문채널 소속 기자 15명을 대상으로 취재원 익명 보도 행태에 대한 인식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익명 보도가 남발하는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1. 익명 취재원 보도의 관행에 관한 논의

먼저 익명 취재원 표기와 편집 방식에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 하에 이뤄진 합의, 즉 암묵적인 관행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관행은 1차적으로 기자와 취재원의 상호 작용 단계를 거친 뒤 2차적으로 데스크의 게이트키팅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

되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기자들은 권위있는 취재원(authoritative source)을 선호한다는 싸르(Sahr, 1993)의 지적처럼 공적 신분, 특히 직급이 고위직일수록 취재원 보호 차원의 익명성을 더욱 보장받고 화면 편집 과정에서도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우선 기자들이 익명 취재원을 인용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관행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표기 양식과 편집 방식으로 나눠 각각의 특징을 살펴봤다.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관계자’와 같은 용어는 취재원의 발표 형식이나 내용, 그들의 직급에 따라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관계자’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는데 이같은 표기 방식은 기자의 임의적 선택이 아닌 취재원과 사전에 합의된 기준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익명 표기 양식은 취재원과 기자의 이해 관계가 균형을 찾은 지점에서 결정되며 이를 통해 취재원은 자신의 신상 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고 기자들은 취재원으로부터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양측은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익명 취재원 보도에 있어서 방송이 신문과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익명 취재원을 화면에 등장시키는 영상 편집의 관행에서 나타난다. 신문과 달리 촬영과 편집을 동반하는 방송 뉴스에서는 모자이크나 음성변조와 같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취재원의 익명성을 보장 한다. 노출 수위는 모자이크와 음성변조의 강도로 조절하되 취재원이 제보한 내용의 민감성과 파급력, 혹은 취재원의 신분이 사인(私人)이냐 공인(公人)이냐에 따라 최종 수위가 확정된다. 공인의 경우 사인에 비해 TV 화면상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익명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공적 신분인 취재원의 경우 조직 내 겪게 될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기자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사적인 취재원 보다 장기적, 영속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취재원과 기자들이 익명 표기나 편집 방식 등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정보를 독식하는 일종의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고도의 정책 결정과 외교의 교섭 배경 등 정보가 공개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에 기자들은 취재원으로부터 배척받지 않기 위해 익명을 전제로 한 여러 비밀들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 차원을 넘어 취재원과 과도한 유착 관계에 놓일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기자들 상당수가 권력과 언론의 이런 비정상적 관계 설정을 특별한 문제 의식 없이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2. 익명 취재원 보도의 동기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또, 기자들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동기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이를 기능적 동기(정보 확보), 사회적 동기(취재원 관계), 편의적 동기(업무 효율)로 분류했다. 이는 기자들의 직접적인 증언에 근거한 경험의 재현을 통해 현상을 파악한 시도로 취재원 선택에 미치는 주관적 동기는 기존의 양적 분석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익명 취재원을 인용할 때는 취재원 보호라는 명분과 정보 확보라는 실리, 두 가지 동기에 따르지만 이 외에도 취재 업무상 편의를 도모하거나 기자 개인의 의도대로 인터뷰를 활용하려는 목적으로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다수의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편의적 동기로 명명했다. 익명 보도의 편의적 사용은 통상적으로 취재원들이 실명보다는 익명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섭외와 취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뉴스 한 꼭지 당 인터뷰가 최소 2개 이상 들어가야 리포트의 완성도를 인정하는 보도국 분위기로 인해 부족한 인터뷰 개수를 채우려는 목적에서 익명 취재원에 대한 사용 동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7문장+2인터뷰'로 도식화된 한국의 기사 작성 관행²³⁾은 기자들로 하여금 모든 리포트마다 10초 안팎의 짧은 인터뷰를 2개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섭외와 접근이 용이한 익명 취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기사 구성에 있어 꼭 필요하지 않은 인터뷰까지 무리하게 익명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한 명의 익명 취재원을 둘로 나눠 각기 다른 인터뷰로 활용하는 등 비윤리적 보도 방식이 동원되기도 한다.

익명 취재원의 편의적 동기는 이처럼 보도 이전 단계 뿐 아니라 보도 이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 업무적 불편과 스트레스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포함한다. 실제로 이번 심층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 상당수가 보도 이후 취재원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한 목적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해 보도한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동료들의 소송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만으로도 익명 보도라는 비교적 안전한 인용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 기술적 장치를 한 뒤 방송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

23) 한국 TV뉴스와 영국 TV뉴스를 비교 분석한 오해정(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 TV 뉴스가 영국에 비해 리포트 시간은 1분 정도 짧은 1분 34초로 리포트당 평균 7.9초의 인터뷰가 2.3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는 국내 다수의 판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의 명예훼손 논란 혹은 이의 제기를 피하기 위해서 부적절하게 익명 보도를 할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엉뚱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상 집단의 크기가 작아 익명 보도시 그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 전체가 의심받게 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한 방송사가 지난 1999년 기무사 장성 중 일부가 병역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당사자 3명을 기무사 장성 A,B,C로 익명 처리했다. 문제는 당시 우리나라 기무사 장성에 해당되는 사람이 7명에 불과해 사건과 무관한 나머지 4명이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바 있다.²⁴⁾ 현재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취재원을 실명으로 할 것이냐 익명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전적으로 취재기자 개인의 판단에 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기자들의 업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도 이후 불필요한 송사 문제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발생케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익명 취재원을 택하게 된 동기를 보다 구체화 시켰다는 점, 아울러 익명 보도에 내재된 새로운 위험적 요소를 발견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익명 취재원 보도의 효과에 관한 논의

마지막 연구주제인 익명 취재원 보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기자들 인식은 절대 긍정, 절대 부정이 아닌 익명 보도의 효과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긍정, 때로는 부정으로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기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응답자 15명 가운데 8명은 긍정적 견해를, 5명은 부정적 견해를, 2명은 중립적 견해를 보였다. 긍정적 견해라 함은 익명 보도가 기사 내용의 심층성, 속보성을 강화시켜 시청자들의 신뢰를 보다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익명을 전제로 취재원들로부터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이러한 심층적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취재와 보도가 이뤄진다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정적 견해는 익명 보도가 갖는 태생적 한계, 즉 정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낮은 신뢰도에서 기인한다. 기사 내용의 파

24) 99가합95970용

급력을 감안한다 해도 발언의 주체가 명확치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취재원과 기자간 정보 독식 및 담합은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보편화하면 언론의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은 무뎌질 수밖에 없고, 결국 언론과 권력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민주주의는 퇴행이 불가피하다. 특히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기사들이 많아질수록 핵심 정보에 대한 수용자들의 접근이 차단돼 그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미디어로부터의 소외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취재원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정보의 자유로운 입수와 유통을 통해서 언론 자유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익명을 고리로 한 취재원과 기자들의 정보 통제 효과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저널리즘이 지배 계급의 현상 유지를 위한 도구로 기능할 때 지배적 패러다임이 형성된다는 맥네어(McNair, 1998)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즉, 기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주요 기관 취재원에 대해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동시에 이들 기관의 고위 관료들에게 주요 뉴스 행위자 (news actor)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양자 관계 속에서 지배층의 패러다임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들의 최소한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익명 취재원에 대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적시하고 익명 보도가 이뤄진 배경 설명이 기사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익명의 이유를 기사에 제시하는 것은 국내 언론에서 시도한 사례가 극히 드물지만 이미 미국의 다수 언론사들이 행동에 옮기고 있는 실천적 보도 준칙이라는 점에서 국내 언론사들의 재고(再考)가 요망된다.

다음으로 기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바라본 익명 보도의 부정적 효과는 익명 취재원을 인용하는데 있어서 기자의 특정 의도가 개입됐을 경우 나타나는 결과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자가 인터뷰 내용이나 취재원 소속 등 개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편집 혹은 변경해 기사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로, 이는 공정성의 두 가지 축인 사실성,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기자들 상당수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의 기준은 문헌 검토를 통해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나 본 논문에서는 사실성과 균형성을 대표적인 속성으로 보고 이를 연구 결과 해석에 적용했다. 인터뷰 결과 대부분 기자들이 익명 보도가 기사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방송 미디어가 갖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익명 보도의 부정적 효과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익명 취재원을 인용하느냐에 따라 기사의 내용과 형식에 심각한 왜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인터뷰 내용에 대한 의도적 재가공이다. 기자가 인터뷰 한 취재원 발언 내용 가운데 리포트 주제와 의도에 부합하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이를 각기 다른 취재원의 발언으로 포장해 보도하는 방식이다. 익명 보도는 취재원의 신체와 육성을 기술적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가리거나 변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편집상의 왜곡이 가능하다. 이 경우 취재원 한 명을 인터뷰하고도 복수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부풀렸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기사 조작 행위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개인의 의견이 마치 다수의 보편적 의견인 것처럼 확대 해석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오도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익명성에 대한 의도적 재가공이다.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이 기자가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제시됐을 때, 그 흐름을 변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실명 취재원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익명으로 전환한 사례도 보고됐다. 시위나 집회 등 사회적 갈등을 다룬 기사에서는 취재원이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등장할 경우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하게 전달된다 는 판단에 따라 이처럼 익명성을 강제로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상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당사자 동의 없는 익명 보도는 이후 취재원과 기자간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우려 또한 제기된다. 셋째, 취재원 신상 정보에 대한 의도적 재가공이다. 익명 취재원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소속, 나이와 같은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개를 허용한다. 공적 신분의 취재원은 전직보다 현직이, 하위직보다 고위직의 발언이 보다 높은 신뢰성과 영향력을 발휘한다. 전직 혹은 하위직의 경우 고위직에 비해 사안의 핵심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뒤따르며 그만큼 정보력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기자들은 기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도적 동기에서 전직 취재원을 현직으로 표기한다든지 업무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람들까지 ‘관계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믿을 만한’ 취재원으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실명 취재원은 얼굴과 소속 정보 등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도적 개입이 불가능하지만 익명 취재원은 개인 신상 정보 일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자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취재원 신상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흘릴 수 있다. 미디어가 현실의 중립적 객관적 전달 통로가 아닌 현실 구성의 적극적 개입 주체로 본 럼(Lum, 2008)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익명을 통해 보도되

는 내용이 기사의 공정성을 현실을 왜곡, 과장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취재원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실상의 기사 왜곡, 조작이라는 점에서 취재 윤리적 관점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하면 취재원 익명 보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나 이는 익명 취재원 자체가 갖는 항구적 속성이라기 보다는 취재원에게 접근, 활용하는 기자의 윤리 의식과 양심에 따라 좌우되는 가변적 속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익명 보도의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익명 보도에 따른 부작용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익명 보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 우리 언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그 실천적 대안으로 첫째, 익명 보도에 대한 언론사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기자들이 취재원 익명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익명 보도에 대한 명확한 예외 혹은 허용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봤듯이 현재의 윤리 강령이나 취재 준칙은 익명 보도의 예외적 허용을 선언만 했을 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익명 보도를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욕타임스의 새로운 시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딘 베케이 편집국장은 지난 3월 국장단 명의로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익명 취재원 사용 관행을 재정비하겠다고 선언했다. 베케이 국장을 비롯한 국장단 3명이 제시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익명 취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한 기사’의 경우 베케이 편집국장, 맷 퍼디 부국장, 혹은 수잔 치라 부국장 등 핵심 간부 세 명 중 한 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세 사람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필 코벳 부국장 등에게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때 담당 부장은 왜 익명 취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장단에게 설명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 외 모든 익명 취재원 기사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때는 해당 기사에 누가 익명을 허락했는지도 기록해 놓도록 한다. 기자 뿐 아니라 익명 취재원 사용을 허락한 사람에게도 강한 책임감을 부여한 셈이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새로 도입한 기준 때문에 기사의 출고가 늦어지고 심지어 낙종을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둘째, 언론사 내부의 제도적 개선으로, 익명 보도의 문제점을 기자 개인이 아닌 시스템 차원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자들이 익명의 취재원을 보다 신중하게 인용할 수 있도록 데스크의 승인 과정이라든지 이들의 법적 대응 업무를 맡아 줄

사내 변호사 자문과 같은 절차가 제도화된다면 뉴스 제작 현장에서 겪는 일선 기자들의 고민과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언론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증가하면서 사내 자문 변호사제도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바쁜 취재 일정 탓에 변호사들의 자문을 일일이 받아 보도 방식을 택하는 기자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기자들이 보도에 따른 법적 소송의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익명 보도를 불가피하게 써야 할 경우에는 데스크의 결재를 맡도록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사내 변호사 자문을 의무화하는 등의 절차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취재 기자의 인식 전환이다. 언론사 차원의 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현장의 기자들 역시 익명 보도를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인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익명에 숨으려는 취재원을 대중 앞으로 당당히 서게 해 자신 혹은 조직의 입장을 밝히도록 설득하는 것도 기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 없이 단순히 인터뷰 섭외나 취재의 편의를 위한 손쉬운 보도 수단으로 익명을 택하는 것은 권력의 감시자라는 기자 본연의 사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 TV 뉴스 보도 관행의 과감한 혁신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과 같은 1분20초의 백화점 나열식 보도 관행을 탈피해 뉴스의 형식과 내용을 심층화하는 방향으로 보도국 차원의 혁신이 이뤄진다면 무리한 익명 보도가 크게 줄어들고 기자 한 명이 섭외부터 편집까지 모두 책임지는 현재의 과도한 업무 시스템에도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익명 보도가 갖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참여한 기자 15명 모두 취재원을 익명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익명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보도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의 척박한 취재 풍토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소수의 의견으로, 취재원이 익명이냐 실명이냐와 같은 형식적 요건이 기사의 신뢰도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중립적 견해도 제시됐다. 공정성이나 신뢰도와 같은 요소는 기자 개인의 능력과 철학, 그에 따른 결과물인 뉴스의 완성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취재원의 익명 여부가 결정적 변인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익명 보도 효과에 대한 중립적 견해는 단순한 양시양비(兩是兩非)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익명 보도가 불가피한 우리 언론의 현실을 감안해 취재원의 익명성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 모색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B.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기자들이 인용하는 익명 취재원이 한국 언론의 관행으로 굳어지게 된 원인과 배경을 추상적 이론의 틀이 아닌 일선 기자들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다가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한국 언론의 익명 취재원 사용 관행의 문제점은 단순히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빈도나 유형이 아니라 기자들이 익명 취재원에 접근하는 동기와 그에 따라 나타나는 기사 내용과 형식상의 왜곡에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둘째, 연구 범위의 확대다. 즉, 신문 기사에 국한됐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 대상을 TV 뉴스로 확장함으로써 익명 보도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 적 조직 문화와의 연관성이라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 보도를 둘러싼 기자와 취재원과의 유착, 혹은 기자와 데스크와의 갈등 관계를 통해 익명 보도와 한국적 조직문화의 대표적 속성인 권위주의, 가족주의와의 연계성을 밝혀냄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한 점도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의 규모적 한계는 후속 연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3대 지상파 방송사, 4개 종편, 1개 보도전문채널 총 15 명의 기자들에게 실시했다. 따라서 인터뷰 결과를 다른 지역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기자들의 출입처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함에 따라 연구 대상이 공적 취재원에 편중돼 일반 취재원의 중요성이 간과된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예비 조사로 실시한 TV 뉴스에 대한 내용 분석 대상이 방송 3사 메인뉴스 6개월치 기사에 그쳐 통시적인 추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CNN, BBC와 같은 해외 방송과의 비교 연구가 없었다는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앞으로 한국 방송에서 발생하는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보다 종체적인 분석틀을 개발해 이를 지역 방송과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들로 확대 적용하는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향후 방송 기사에 대한 면밀한 양적 분석을 시도해 질적 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와 균형점을 찾는 연구 작업이 이뤄진다면 향후 방송 뉴스의 개선 작업에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계희열 (2007). 『헌법학(중)』. 서울: 박영사.
- 권대훈 (2009).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권순민 (2009). 취재원보호와 기자의 증언거부권. 『법조』, 제631호, 227-237.
- 김민정 (2015). 취재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언론과법』, 14(2), 125-157.
- 김사승 (2007). 게이트 워칭. 『서울신문』, 8월 28일자 칼럼.
- 김연미 (1997). 『한국 신문 정치 기사의 취재원과 취재원 밝히기: 역사적 분석, 1955-1995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영욱 (2006). 신뢰성이 중요, 표현도 구체적이어야. 『신문과 방송』, 2006년 2월호, 28-31.
- 김은주 (2002). 『TV뉴스의 취재원 사용관행과 제시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 방송 3사의 저녁 뉴스와 미국 NBC Nightly News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협 (1999). 위법적 취재 관행과 법적 환경. 『언론중재』, 1999년 6월호, 62-79.
- 김지영 (1996). 취재원 보호와 취재원 명시. 『신문과 방송』, 제305권, 46-50.
- 김지영 (2008). 『한·미 신문의 취재원 사용 관행 비교 연구: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 석사학위논문.
- 남재일 (2006). 『한국 언론 윤리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재단.
- 문종대, 진현승, 안차수 (2007). 언론 수용자의 공정성 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8호, 183~210.
- 박동숙, 조연하, 홍주현 (2001).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적 친분 고리: 출입처에서의 취재원과 기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탐구. 『한국언론학보』, 45(특별), 367-396.
- 박재영, 이완수 (2007). 인용과 취재원 적시에 대한 한미 신문 비교. 『한국언론학보』, 51.
- 박재영 (2005). 공정성의 실천적 의미.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167~195.
- 박재필 (2014). 익명성을 버려라. 『아유경제』, 9월 17일자 칼럼.
- 박형준 (2013). 공정성 개념과 평가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 연구. 『언론과학연구』, 13(1).

- 송문석 (2009). 『전국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의 취재원 활용 관행 비교: 신문 1면 기사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송종길 (2007). 매체별 신뢰도의 유사성 및 차별성 분석연구. 『한국언론학보』, 51(2), 180-202.
- 송효빈 (1993). 『체험적 신문론』. 서울: 나남.
- 심석태 (2014). 언론자유의 본질에 비춰본 한국 언론법제의 현실과 개선 방향. 『관 훈저널』, 2014년 6월호, 130-132.
- 양선희 (2008).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의제설정효과. 『한국언론학보』, 52(4), 81-104.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2006). 『연세한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 오해정 (2014). 『한국과 영국 공영방송 TV뉴스에서의 몰래카메라 사용 행태에 대한 윤리적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의선 (2003). 취재원 보호의 적정 범주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방송학보』, 제 17-4호.
- 유재천, 이민웅 (1994). 『정부와 언론』. 서울: 나남.
- 은광사 (1985). 『현대국어사전』. 서울: 은광사.
- 이건호, 정완규 (2008). 한국과 미국 신문의 1면 기사 비교. 『한국언론학보』, 52(4), 25-49.
- 이광재 (1995). 취재원 익명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널리즘 비평』, 제17권, 1995년 1월호.
- 이규호 (2012). 기자의 취재원 보호와 증언거부권, 『민사소송』, 제16권 제2호, 2012, 65-99.
- 이민웅, 이창근, 김광수 (1993). 보도공정성의 한국적 기준을 위한 연구. 『방송연구』, 36호, 180-213.
- 이수형 (2007). 『취재 과정에서의 윤리와 불법 문제』. 정종섭 편, 언론과 법의 지배. 서울: 박영사.
- 이원락 (2004). 『신문의 권력기구화에 따른 뉴스 생산 관행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재경, 김진미 (2000). 한국 신문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한국언론학연구』, 2.
- 이재경 (2004). 한국 TV뉴스 양식과 취재 시스템 - 그 특성과 한계. 『2004년 연구 보고서 전환기의 한국형 방송저널리즘』, 67-106.

- 이종률 (2005). 『취재원 비닉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병국 (2002). 『언론 법제와 보도』. 서울: 나남.
- 장호순, 오수정 (2001). 한미 신문의 취재원 이용 관행 연구. 『보도 비평』, 7호.
- 장철준 (2015).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헌법적 관점에서. 『언론과 법』, 제14권 제2호, 99-123.
- 정우열, 임재강 (2001). 지식 정보 사회에 있어서 한국 행정 문화의 쇄신전략. 『한국 인간관계학보』, 제6권 1호, 207-223.
- 조동시, 양승혜 (2006). 익명보도 많은 편 80.5%, 취재원의 42%가 익명. 『신문과 방송』, 2006년 2월호, 8-18.
- 지성우 (2003). 언론기관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5권 제2호.
- 최영묵 (2005). 『시민 미디어론』. 서울: 아르케
- 팽원순 (1989). 취재원 보호와 보도의 자유. 『신문과 방송』, 제225권, 30-37.
- 홍연희 (2015). 『한국 신문의 익명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 조선일보 1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용락 (1986). 『한국 신문 기사에 인용되는 공개되지 않는 뉴스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외국 문현

- Anderson, D. A. (1982). "How newspaper editors reacted to Post's pulitzer prize hoax." *Journalism Quarterly*, 363-366.
- Berkowitz, D. (1987). "TV news sources and news channels: A study in agenda-building." *Journalism Quarterly*, 64, 508-513.
- Berkowitz, D. & Beach, D. W. (1993). "News sources and news context: The effect of routine news, conflict and proximity." *Journalism Quarterly*, 70, 4-12.
- Brooks, B., Kennedy, G., Moen, D., & Ranly, D. (2002). *News reporting and writing*, 7th Ed. New York: Bedford/St.Martin's Press.
- Culbertson, H. M. (1980). "Leaks: A dilemma for editors as well as officials." *Journalism Quarterly*, 57, 402-408.

- Fedler, f., Bender, J. R., Davenport, L., & Draget, M. W. (2005). *Reporting for the med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 Frank McCulloch (1984). *How 31 Editors Solved Their Toughest Ethical Dilemmas*, Amer Society of Newspaper Editors.
- Grabe, Maria E. Zhou, Shuhua and Barnett, Brooke (1999). "Sourcing and Reporting in News Magazine Programs: 60Minutes versus Hard Cop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 76, 293-311
- Hale, F. Dennis(1983). "Unnamed News Sources : Their Impact on the Perceptions of Stori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5(winter)*, 49-56.
- Hoyt, C. (2008). "Culling the anonymous sources." *The New York Times*. June, 8.
- Katz, E., J. G. B., & Michael G. (1974). *Utilization of mass communication by the individual in the uses of mass communication : current perspectives on gratifications research*, Jay G. Blumer and Elihu katz, eds., Beverly hills: Sage 19-32.
- Kovach, B., Rosenstel, T.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Three River Press.
- Lum, C. M. K. (2000). "Introduction : The intellectual roots of media ecology." *The New Jersey Journal of Communication*, 8(1), 1~7.
- Mauchenheim, Egon von, "Information freedom founded on anonymity of information." *IPI Report*, Vol. 22, No.7/8, July/August, 1973.
- McNair, B. (1994). *News and journalism in the UK*, London: Routledge.
- Mencher, M. (1991). *News reporting and writing*, 5th Ed. Dubuque, I A: Wm.C. Brown Publishers
- Middleton, Kent R. & Lee, (2013). William E., *The law of public communication*, 8th ed. Pearson
- Tuchman,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Gasn.Herbert.J. (1979). *Deciding what's news* New York : Vintage Books
- Rich, C. (2003). *Writing and reporting news: A coaching method*, 4th ed. Australia: Thomson Wadsworth.

- Sahr, Robert. (1993). *Credentialing experts: The climate of opinion and journalist selection of sources i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Robert J. Spitzer(Eds.), Media and Public Policy, Westport: Connecticut.
- Schudson, Michael. (1978),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New York: Basic Books.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 on mass content*, New York: Longman.
- Sigal, Leon V.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 The Organization and Politics of Newsmaking*, Lexington, Mass, : D.C. Heath and Co.

기타 참고 자료

- KBS 다시 보기 서비스 (<http://news.kbs.co.kr>)
- MBC 다시 보기 서비스 (<http://imnews.imbc.com>)
- SBS 다시 보기 서비스 (<http://news.sbs.co.kr>)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http://www.ikpec.or.kr/>

ABSTRACT

A study of perception of TV reporters about anonymous news sources : Focusing on the practice, motivation, effect of the anonymous reporting.

LEE, YOON HEE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According to sources close to President”, “According to a Bluehouse official”, “with knowledge from experts” These are examples of anonymous news sources that are frequently overused expressions in the korean broadcasting as well as newspapers. While anonymous sources might build high levels of trust with their audience through advanced information likely protected by the media, they are often revealed to either wrong information or subjective point of view from reporters.

This study focuses on anonymous sources specifically from TV news because a broadcasting system has more ripple effect than a newspaper based on visual medium. Moreover, most of the research is focused on the validity and the risk of anonymous sources even limited in newspapers and surprisingly little is known about anonymous sources from broadcast news. This lack of research was motivation for the study and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 How can the practice of anonymous sources in TV news be described?
- What motivates reporters to use anonymous sources?
- What does a broadcast reporter recognize the effect of anonymous reporting?

The object of study was 15 broadcast reporters studied by in-depth interview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he expression of anonymous sources is followed by a prior agreement depending on presentation content, format, and positions. The most critical difference between newspapers and broadcast system is anonymous sources shown in TV screen so he or she can take to remain anonymous through blur effect or voice alteration. It is founded that the higher official level of anonymous sources leads more priority in the editing process and better protect their identity. This practice creates interaction between the reporter and anonymous sources at first, and then finally confirmed by the desk via gatekeeping process.

Second, a motivation of reporter using anonymous sources consists of four categories; a functional motivation for securing information, a social motivation for a relationship with news source, a convenience motivation for efficient reporting. There are many cases where reporters use anonymity for their own purposes or convenience.

Third, the effect of anonymous sources on articles brings both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 yet all subjects agreed that a quotation of information from anonymous sources should be allowed under current conditions of news collection.

In conclusion, there is potential risk such as selection or application of anonymous sources decided by a valuation of reporter himself or herself, therefore a guideline of collecting and reporting news should be set up for reducing the risk. Even though we have general principle of ethics and regulation of reporting in newspapers and broadcast news, they are not mandatory and cursory standard. If the press develop more efficient alternative guideline and recognize the potential risk of anonymous sources, broadcast systems in Korea will be more credible and reliable to people.

Key Word : Korean broadcasting, Anonymous Reporting, Anonymous Sources, News Source Practices, In-depth interviewing